

2007 연구보고서 수시과제-1

2007년 남북학술 · 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 연구

김원홍 · 김정혜

KWADI

2007 연구보고서 (수시과제)-1

2007년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연구책임자 : 김 원 흥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정 혜 (본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2007년 10월 2일-4일까지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여성분과가 만들어져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 속에서 여성교류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북의 여성교류는 여성 공동행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남과 북의 여성 삶의 질적 향상과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례로,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강화 사업, 여성근로자 교육훈련 사업,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사업, 남북한 여성관련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여성의 만남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남과 북, 일본을 오가며 진행되었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이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지속적인 남북 여성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02년과 2005년에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여성만의 힘으로 개최함으로써 통일의 밑거름이 될 여성들의 연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여성들이 만날 때마다 남북여성들간의 사상과 이념, 언어의 차이는 남과 북의 차이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통일이후 바람직한 여성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통일 전부터 언어·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원에서는 통일문제연구협의회와의 공동사업인 2007년도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수시과제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남북한 여성교류가 확대될 것을 예견하여 남북한 여성정책 및 교류협력 상황 비교와 함께 남북한 여성관련 전문용어 비교연구 및 이질화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정부 관계자와 연구자, 여성운동가 및 남북한 여성문제에 애정을 가진 많은 관련자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원내외 여러 선생님들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과제를 진행하여 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경 애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II. 남북한 여성현황 및 교류현황 비교

1. 남북한 여성현황	9
가. 정치	9
나. 경제	12
다. 가족	18
라. 임신·출산/복지/보육	21
마. 교육	24
2.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	27
가. 같은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여성교류 현황	28
나. 개별적 주제를 지닌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31
다. 소결	33

III. 남북한 여성용어 비교

1. 정치	39
2. 경제	40
3. 가족	41
4. 임신·출산/복지/보육	43

5. 교육	45
6. 기타	46
7. 소결	47

IV. 남북한 여성교류 확대 및 이질감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

1. 언어 등 남북한 여성간 이질화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51
2. 북한 여성에 대한 협력기금 조성 및 여성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53
3. 여성통일운동을 통한 남남여성협력 체제 강화	53
4. 통일 후 가치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54
5. 통일과정 정책에 여성참여 보장	54

참고문헌	56
------------	----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사전	59
------------------------	----

표 차 례

<표 1> 남북한의 정치·행정 분야 여성대표성	10
<표 2> 북한의 직종별 여성 분포	14
<표 3> 남한의 직업별 여성 비율	15
<표 4> 북한의 남녀평등수준에 대한 탈북자들의 응답	20
<표 5> 남한의 대학원 학생 중 여학생 비율 (2006)	26
<표 6>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31

첨 부 차 례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 참여기관 현황	86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현재 한반도는 전세계 200여 국가 중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그간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은 경험사업 차원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민간차원의 경험사업이 추진되고 사회문화교류차원에서 체육교류, 방송·문화교류, 학술교류, 종교교류, 남북공동행사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남한주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시행 이후 2007년 3월말까지 신청 29,087건, 승인 28,824건, 성사 31,20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성사된 분야로는 경제분야가 18,312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관광 3,231건, 교통통신 2,430건, 대북지원 2,120건, 경수로 1,114건, 종교 252건, 언론출판 236건, 체육 235건, 학술 156건 등이다. 남북한 여성교류의 경우 1991년부터 2007년 5월 현재까지 총 22건(<표 6> 참조)이 성사되었는데, 주요 주제로는 1991년-1993년간 4차례에 걸쳐 개최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모임,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문제와 관련, 학술 등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남북한 여성들이 만날 때마다 남북여성들간의 이념과 언어의 차이가 확인된다는데 있다.

이처럼 여성교류가 미흡하지만, 여성이 삶의 기본바탕인 생활의 주책임자라는 측면에서 여성교류가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1990. 10. 3)경험에 비추어 특히 급속하게 이루어진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성문제를 이미 보았다. 한 예로 통일되기 이전에 동독의 경우 3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동서독간 여성간 합의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독의 경우 불법으로 되어있어 동독여성들이 불평이 컸던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남북여성이 통일 이후 바람직한 여성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사전에 남북한 여성문제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면서 통일 전에 언어·문화적 갈등도 최소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 이질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위적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남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남한의 언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본적으로는 북한의 독자적인 언어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언어를 가장 중요한 문화 요소로 보고 여기에서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관 주도의 언어 정책을 펴고 있다는데 변화의 차이가 더욱 더 심해졌다는 점에 기인한다. 물론 문법상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으로 이와 관련된 새 용어가 생성되었고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독자적으로 신어를 만들어 씀으로써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는 더욱 격차가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남북한의 언어 학자들이 정치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동안 학술적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남북 통일어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나마 중국의 조선동포들이 남북한 언어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다리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이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는 2007년 5월 17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가 연결될 시점에서 앞으로 남북한 여성교류가 확대될 전망과 함께 독일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남북한 여성관련 전문용어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2008년도 이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재정 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과 공동으로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 사전 작업을 위하여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공동사업으로 2007년도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사업에 참여하는 출연기관은 13개 기관으로 정치, 경제, 교육, 국토, 정보통신, 환경, 여성 등의 분야이다(첨부 참조). 이에 본원은 여성분야로 참여하였으며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에 참여를 계기로 남북한 여성(정책) 및 교류협력 현황과 이질화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을 시도하

였다. 제2장에서는 남북한 여성정책의 비교와 교류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① 남북한 여성정책 및 현황의 비교, ②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을 살펴본 것은, 남북한 여성용어 비교의 경우 사전을 이용한 정태적 연구이지만, 실제 남북한 여성교류를 통하여 동태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남북한 여성의 교류를 통하여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남북한 여성정책의 영역별 순서에 따라 남북한 여성용어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한 여성교류 확대 및 이질화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결론을 내렸다.

나.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① 남북한 여성정책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에서 출판된 1,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② 남북여성교류 현황을 살펴보았다. 통일부에서 수집한 여성교류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다. ③ 남북한 여성용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한에 출판되어 있는 여성학용어사전과 북한에 출판되어 있는 백과사전 및 용어사전을 수집하고, 비교 정리하였다. 정리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1차로 남한에 출판된 몇 종의 여성학용어사전을 정리한 후 여성용어 비교의 범주를 여성의 정치활동, 경제활동, 가족, 임신·출산/보육/복지, 교육 등으로 정하여 원내의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빼야 할 부분과 추가해야 할 분야를 정리하였다. 여성용어비교의 범주를 정치활동, 경제활동, 가족, 임신·출산/보육/복지, 교육 등으로 정한 것은 본 연구가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사업 참여를 위해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연구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남북한 여성연구를 통하여 여성분야 중 중시되는 분야로 정치, 경제, 가정, 복지 등의 중요성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북한문제전문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들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면서 2007년도 연구로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용어비교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어졌기 때문이

다. 이러한 방법으로 1차에서 약 300여개의 여성관련 용어를 선정하였다.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이다. 1차로 선정된 남한 용어 각각에 상응하는 북한 용어를, 탈북자를 통하여 자문을 받은 다음 북한 사전에서 해당 용어를 찾았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는 20여개에 불과하였다. 2차로 북한 사전을 통하여 역으로 북한여성과 관련된 용어를 찾은 후, 남한 사전에서 유사한 용어를 찾아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체 약 90개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 정리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필요 없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탈북자와 남한 언어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남북한 여성용어에 대한 비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용어정리의 분석 틀은 통일문제연구협의회에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표제어는 ① 용어는 동일하나 내용이 다른 것(동철이의어), ② 용어는 다르나 내용이 동일한 것(이철동의어) 중심으로 찾고, 각 표제어에 남북 쌍방의 주석을 다는 방법을 택하였다.

셋째, 북경에서 2007년 8월 6일-9일에 개최한 북한 연구자와의 워크숍이다.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주관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관련 남북회의에 참여하여 남북한용어의 이질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출장목적은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의 중간결과물에 대한 북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의미 있는 예비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는데, 동 워크숍에서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남측은 통일문제연구회 소속 9개 기관의 10명의 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통일문제연구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화문제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참석하였고, 북측은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원 김일성혁명역사연구소 소장, 리동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 등 4명이 참석하였다. 북한측 참여자는 특히 북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타아소 문제와 함께 음식교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 대한 진전을 통일문제연구협의회에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다.

II

남북한 여성현황 및 교류현황 비교

1. 남북한 여성현황
2.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

1. 남북한 여성현황

가. 정치

북한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은 높은 편이다. 정치 참여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규정한 최초의 법령인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시행 세칙 1조에서 여성이 지방 및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남성과 같이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북한에서 여성들의 정치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이다.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 대의원은 이미 21%¹⁾였으며, 1998년 7월에 구성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0.1%였다. 상임위원회 여성비율은 8,9기에는 20%, 10기에는 11.8%였다.²⁾ 지방인민회의에서 여성 비율은 좀더 높아서 25% 정도를 유지한다.³⁾ 남한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남한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여성후보 할당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여성 국회의원을 2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총선의 여성 당선자는 13%에 불과하여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여전하며, 이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여성대의원 비율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이 격차는 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북한은 지방인민회의의 여성 비율이 5%가량 더 높지만, 남한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여성 비율이 엇비슷하다. 그나마도 2002년 지방선거에서 3.4%였던 것이 2006년에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4.5%로 대폭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성당선자의 대부분이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라는 점이다.

1) 제5기 최고인민회의는 1972년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손봉숙 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235쪽 참조

2) 정현백(2001), “북한 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사회』 제12호, 90쪽 참조

3) 손봉숙(1993),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공보처, 164쪽 참조

〈표 1〉 남북한의 정치·행정 분야 여성대표성

	분야	여성비율(%)
남한	17대 총선 당선자	13.0
	지방의회의원	14.5
	행정관리직	7.0
	고위공직자(5급 이상) 중앙정부	8.1
	고위공직자(5급 이상) 지자체	5.9
북한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0.1
	10기 상임위원회	11.8
	지방인민회의	25.0
	노동당 중앙위원회	4.5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 여성비율이 20% 내외라는 것은 남한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1년에 1~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치인보다는 노력영웅, 판매원 등 정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⁴⁾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주권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이지만, 그 실질적 위상은 명목상의 권한을 갖는 형식적 추진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의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한 연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국가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토론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예산 집행과 예산안 구성이 잘 되었다는 칭송 발언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남북통일이나 인민경제 발전, 어린이 보육교양제도, 의무교육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당의 기본적 정책 테두리 내에서 토론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⁵⁾ 이를 볼 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여성문제를 발굴하거나 여성의제를 형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노동당에서 당의 방침에 따라 성별, 지역, 직종, 계층 분포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안배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여성비율

4) 손봉숙 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233~4쪽 참조

5) 국토통일원 편(1988),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1~4권, 국토통일원 참조; 손봉숙 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247~8쪽에서 재인용

에 따라 당선된다고 볼 수 있다.⁶⁾ 그러므로 1970년대 이후 20%라는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1970년대 이후에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에는 여성이 매우 적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여성비율은 평균 4.5%에 불과하다. 260여명의 역대 내각·정무원 관료 중 여성은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⁷⁾ 반면 이들이 맡는 역할은 남한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남한의 여성 장·차관은 여성, 복지, 보건, 문화 등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인식되는 분야에 집중되어 왔지만 북한의 여성정치인들은 여성 특유의 역할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김복신은 부총리로서 무역위원회 위원장,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경공업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고 윤기정은 오랫동안 재정부장을 역임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은 북한 최대의 여성조직이라는 점에서 여성문제를 발굴하고 국가적 해결을 요구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맹은 1946년 창립 당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 문맹퇴치에 힘쓰는 등 여성운동의 기초적 과제를 담당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다가 1961년 김일성 교시 이후 여맹의 과업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여성의 지위향상보다는 당의 주요 과업을 관철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한쪽 수레바퀴’ 역할에 주력하도록 강조된 것이다.⁸⁾ 일례로 2005년 10월에 개최된 여맹중앙위원회 제44차 전원회의 내용을 보면, 노동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여맹 사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면서,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을 기본으로 한 사상교양에 충실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맹을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여성혁명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여맹원들을 선군혁명동지로 키워내며,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군사력 강화 사업에 최우선적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제43차 전원회의에서도 주로 비슷한 내용이 논의되었는데, 여성 관련 의제로는, “우리의 고상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견결히 지키며 거리와 마을, 가정을 위생문화적으로 알

6) 손봉숙 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234쪽 참조

7) 진수희(1997), “통일한국의 여성정책 연구”, 『바람직한 통일문화』, 민족통일연구원, 388~9쪽 참조

8) 손봉숙 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253쪽 참조

뜰히 꾸리고 자녀들을 능력있는 강성대국건설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는데서 녀맹원들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전부이다.⁹⁾ 이 또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수호하는 방향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맹은 창립초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노동당의 사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 노력이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남성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남한보다 더 심각하게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여성노동력 활용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결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헌법은 남녀동권 원칙 아래,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며,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에서 구체화되어, 지방 및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 여성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남녀평등권 법령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의 권리를 규정하여, 법률상 형식적 평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헌법 역시 성평등, 여성복지, 모성보호, 여성의 근로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성의 근로보호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이 평등한 노동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성불평등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성별에 따른 직무분리와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 ‘남녀로력 교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남성노동력을 더 힘들고 어려운 분야로 돌리고, 그 자리에 여성노동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북한의 노동력 배치 원칙

9) 조선중앙통신사(2005), 「조선중앙연감」 제58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144쪽 참조

에 부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노동력은 성별, 나이, 체질, 기술기능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험하고 쉬운 일”은 여성들과 체질이 약한 사람들이, “힘든 일”은 건장한 청장년들이, 기술기능이 요구되는 일은 기술과 기능을 소유한 일꾼들이 수행하도록 배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¹⁰⁾ 북한의 한 노동행정이론 문헌은 여성의 체력이 남성에 비해 약하고, 여성은 출산,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성격·취미·소질에서 남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섬세하고 알뜰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라 노동력을 달리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¹¹⁾ 이는 여성노동력 동원의 필요성, 여성을 가능한 한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치사업, 모성보호, 잔존하는 성역할 분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여성을 “험하고 쉬운 일”에 배치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숙련을 요하지 않는 보조적인 인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북한의 직종별 여성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행해진 연구들에 나타난 여성비율을 모아,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서 남성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¹²⁾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1970), 「경제사전」 1,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608쪽 참조

11) 리창근(1992), 「우리당에 의한 노동행정이론의 심화발전」,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78~9쪽 참조; 박영자(2004), “북한의 여성노동 정책(1953~1980년대): 노동계급화와 수평적·수직적 위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147쪽에서 재인용.

12) 김애실(1997),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이배용 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31쪽 참조; 1985~1995년의 총 6개 자료에서 나타난 여성 비율을 모은 것으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비율은 인용하지 않았다. 여러 자료를 모은 것이므로 분류법이 일관되지 않으며 동일한 직종이 두 군데에 분포되어 있을 수 있다. 원자료 출처는 내외통신 448호 (1985. 8.16); 이환구(1986), 「북한의 실상과 허상」, 안보교육연구소, 267쪽; Nicolas Eberstadt & Judith Banister(1990), *North Korea: Population Trend and Prospect*,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Census; 김애실(1990), *Women of Korea*, 1990년 1월호; 정명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1991.11.26) 구두발제 내용; 교육방송(EBS)(1996.11.24)의 1995년도 북경방송

<표 2> 북한의 직종별 여성 분포

여성 비율	0~20% (남성집중)	20~40% (남성다수)	40~60% (양성평등)	60~80% (여성다수)	80~100% (여성집중)
직종	대학교수, 정무원 부장, 단광, 노동, 중공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업, 고등중학교원, 기술계통 학교원, 전문가, 기술자	공업, 농업, 국영기업 노동자, 공무원 및 사무원, 의사, 교원	경노동자, 사무원, 간호사, 보육원 교양원, 경공업, 인민학교원, 농민, 협동기업 노동자, 보건, 상업유통, 편의봉사	섬유산업, 유치원 교양원, 간호원, 미용사, 방직공장 노동자

<표 2>를 보면, 비교적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공무원, 의사이며, 공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중공업, 여성이 경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분포도 유사하다. 대학교나 고등중학교와 같은 고등교육에는 남성교원이, 인민학교나 보육원, 유치원 같은 초등교육, 학교 전 교육에는 여성교원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한 연구는 1990년대의 『로동신문』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성별분리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의 『로동신문』에 실린 사진자료를 보면, 사무직, 경공업 분야에는 대부분 또는 전원이 여성이며, 이와는 반대로 중공업 분야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극소수이거나 전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¹³⁾ 더구나 1980~90년대의 경기침체 기간에는 여성에게 가내작업반을 통한 소비품을 생산 및 전통적 돌봄 역할이 독려되었다는 분석¹⁴⁾을 보더라도, 노동력 배치의 성별 분리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남한은 북한과 같은 인위적 노동력 배치가 행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유사한 직종별, 직급별 성별 분리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표 3>¹⁵⁾을 보면 같은 교육 분야라고 하더라도 초등교육에는 여성이,

13) 손봉숙 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39~40쪽 참조

14) 이미경(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 37쪽 참조

15) <표 3>은 통계청의 “직업/성별 취업자” 통계자료 및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가

고등교육 및 고위직에는 남성이 더 많이 분포되는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직, 판매직 여성비율이 높고, 기계조작 등 기술직 여성비율은 낮다. 의료전문직에서는 약사의 여성비율이 높지만 의사의 여성비율은 채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남북한을 비교해볼 때, 성별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북한에서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진출하고 있는 직업 중 의사, 공무원의 남한에서의 여성비율은 낮은 편이다.

<표 3> 남한의 직업별 여성 비율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초등학교 교장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대학교 정교수	의사	판매 종사자	약사	서비스 종사자	초등학교 평교사
여성비율 (%)	8.2	9.3	13.0	13.5	19.7	54.1	64.0	70.3	80.1

북한에서 임금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며 공식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여성은 ‘험하고 쉬운 일’에 배치되기 때문에, 여성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며 노동조건 또한 남성보다 열악하다. 남한의 여성노동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어 노동보호에서 소외되어 온 것처럼, 북한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다. 공식부문 근로자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공무원 등으로, 남성노동자의 81.8%가 공식부문에서 일한다. 반면 수선·세탁, 이·미용 등의 편의봉사자, 가내작업반, 경제선동대 등의 비공식부문에는 여성노동자의 41.8%가 집중되어 있다.¹⁶⁾ 공식부문 근로자는 식량배급과 연금을 받을 수 있

저은 자료를 여성비율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직업별 취업자(성별)”는 직업군에 따라 남녀 취업자 수를 집계한 자료로, 그 중 여성비율이 낮은 직업군 두 가지와 높은 직업군 두 가지를 뽑았다. <표 3>의 수치 중 의사, 약사는 2005년 기준이며 그 외에는 모두 2006년 기준이다.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직업/성별 취업자” 참조; 통계청(2007),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3~5쪽 참조

16) 1986년 기준. 김애실(1997),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이배용 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30쪽 참조

으나 비공식부문 근로자는 식량배급량이 절반에 불과하며 연금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⁷⁾ 남한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서, 여성 임금근로자 중 60.2%가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남성은 43.3%) 이들은 노동보호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2005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5.4%에 그치고 있다.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6.2% 수준이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경제활동 중단이 된다는 점은 남북이 유사하다. 북한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대체로 직장을 그만두는 편이라고 한다. 남녀평등사상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서, 직장에서 기혼여성을 달가워 하지 않으며 남편도 여성이 살림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현상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주로 나타난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1980년대 중반에 미혼여성들은 대개 취업하였으나 기혼여성 취업률은 3~40%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전문기술직과 체력노동업종을 제외한 상업, 복무업 및 일반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 실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식량배급 정책도 기혼여성의 실직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이다. 미혼여성엔 직업이 없으면 양식배급관계가 곧 취소되나, 기혼여성엔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도 양식관계를 남편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1999년 탈북한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의 직업을 남편의 거주지 내에서 얻도록 한다는 점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다.²⁰⁾

남한에서 결혼퇴직제는 성차별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지만, 비공식적인 결혼퇴직제, 육아부담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공공연한 현상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하지만 활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을 전후하여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 취업자수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

17) 진수희(1997), “통일한국의 여성정책 연구”, 『바람직한 통일문화』, 민족통일연구원, 397~8쪽 참조

18) 임순희(2005),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 183쪽 참조

19) 림금숙(1999), “90년대 이후 조선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학술대회 자료집, 20~1쪽 참조

20) 최진이(2004), “여성 ‘기본 존엄’ 보장 안 되는 왜곡된 성문화 만연”, 『월간 말』 2004년 9월호, 78쪽 참조

35세에 감소하고, 35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M자 곡선을 보인다.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에는 이전의 직업이나 지위로 돌아가는 예는 드물다. 이는 높은 비정규직 여성 비율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북한여성들의 경제활동 양상과 지위는 1990년대에 들어 발생한 식량난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배급이 중단되는 등 공식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가족 생계유지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도 노동법 규정상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의 수입원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여 밥상을 차리는’ 일에 여성들이 더 주도적²¹⁾이기 때문이다.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경제활동으로 장사를 꼽고 있다. 그 다음이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업 활동, 집짐승 기르기, 텃밭·뽕기밭 경작 등의 부업이다.²²⁾ 남성들은 장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꺼리기 때문에 종래에도 장사는 주로 여성의 일이었고, 가내작업반과 편의봉사업 또한 식량난 이전에도 주로 여성이 담당하던 일이었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여성들은 단지 생계보조자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생계 유지가 개별 가족 차원에서 해결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위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거나 집안일을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있으며, 장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하는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들이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는 현상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전향적으로 도입함을 의미하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엄격한 성별분업을 완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가부장제 질서의 와해를 불러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편이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보조적일 뿐이고, 그것도 경제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하층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²³⁾ 결국 경제위기 속에서 북한여성들은

21) 최명숙(1999),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학술대회 자료집, 11쪽 참조

22) 임순희(2005),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 182쪽 참조

23) 구수미·이미경(2005), “체제변화시기 북한도시여성의 지위변화: 중국 도시여성과의 비교”, 『

식량난으로 인해 증가된 돌봄노동, 가사노동과 더불어 생계유지, 가내작업반 및 각종 무보수노동 등 여성으로서의 이중, 삼중의 노동 부담을 지고 있으며, 반면 그로 인한 남녀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가족

북한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가족은 국가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가정의 혁명화는 곧 공산주의 건설의 기반이 된다. 결혼과 가족제도를 사회주의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남한에서 결혼과 가족이 최소한 이념형적으로는 애정을 바탕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면, 북한에서는 여기에 ‘혁명적 동지애’를 추가할 것이 요구된다.

북한의 혼인가능연령은 남한과 비슷하다. 남자는 남북한 모두 18세, 여자는 북한 17세, 남한 16세로 여자의 혼인가능연령이 남자보다 1~2세 낮다. 북한의 가족법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²⁴⁾을 장려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남한의 결혼연령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27.3세, 여자 24.8세로 남한의 30.9세, 27.8세에 비해 3년 정도 이른다.²⁵⁾

남한과 북한의 가족법은 혼인과 이혼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 모두 법률혼이 원칙이지만 사실혼 관계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남한에 비해 북한은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가족법 11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혼 또한 재판 이혼만 가능하고, 남한과 같은 협의이혼은 인정하지 않는다.²⁶⁾ 가족법상으로는 재판이혼의 사유가 까다롭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2호, 108쪽 참조

24) 북한 가족법 9조. 1990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개정되었다.

25) 1980~90년대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자 30.31세, 여자 27.28세였다. 최근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좀더 일찍 결혼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자 27.3세, 여자 24.8세로 낮아졌다. 한국여성연구소(2005), 「개정판 새 여성학강의」, 동녘, 341쪽 참조

26) 해방 직후에는 북한에서도 협의이혼이 인정되어, 이혼서를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혼할 수 있었다. 협의이혼이 폐지된 것은 1958년이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1997), 「민사법사전」, 북한: 사회안전부출판사, 695쪽 참조

한 증거가 있거나 군인이 사망한 경우라야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임신중이거나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하여 제기되는 이혼소송은 기각된다.²⁷⁾ 가족법상 이혼시 어머니의 양육권이 규정되어 있는 점도 남한과 다른 점이다. 이혼시 3세 미만의 자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에게 우선적 양육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버지가 기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²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재판에 의해 양육비를 월수입의 10~30%의 범위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호적이 유지되고 있는 남한에 비하여, 북한에서 호적제도는 오래 전에 폐지되어 1946년 9월부터 공민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남한에서는 2008년부터 호적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이 시행될 예정이다. 남북한 모두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남한에서는 2008년부터 혼인신고시의 합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북한 가족법은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구성원 간의 부양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법 제정 당시의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가 담보하였던 공민 부양과 복지가 1980년대 이후부터 가족 내부로 이전되면서 1990년 제정된 가족법에서도 부부간, 부모-자녀간 뿐 아니라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부양능력 없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의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3대 기술혁명'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가사노동의 기계화, 공업화는 물자 부족과 전기 부족으로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²⁹⁾ 그러다가 1998년 헌법 개정에서는 남녀동권 규정³⁰⁾에서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족 내에서도 여성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물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층 아파트에서도 물을 길어 날라야

27) 백과사전출판사 편(1999), 「조선대백과사전」 8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268쪽 참조

28) 최명숙(1999),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학술대회 자료집, 12쪽 참조

29)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5차 대회에서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이 3대 기술혁명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최명숙(1999),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학술대회 자료집, 9쪽 참조

30) 개정 전 62조, 개정 후 77조

하는 등 새로운 가사노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식량을 구하는 일도 가사노동으로 여겨 여성에게 할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양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였던 탁아소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 양육 부담도 더 커졌다.

한편 북한에서 부부간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0~90년대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성역할고정성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족의 주인이 가장이고(93.9%)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86.5%)는 의식이 강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거나 여성은 국가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낮은 편이다.³¹⁾ 탈북여성과의 면담을 통한 다른 연구에서도, 경제위기 이후 북한여성들이 생계에 기여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발언권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은 남성을 가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녀가 평등한 것은 노동생활에서일 뿐이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삶이 불평등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순응하는 편이며 굳이 저항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³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물질 조건의 변화가 여성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지적하였듯 식량난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지만, 반대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북한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함경북도 출신의 한 탈북여성에 따르면, 사회보장이 축소되면서 양육 부담이 커져서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매년 유치원과 인민학교 학생 수,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³³⁾

31) 박현선(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86쪽 참조; 남녀평등수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4〉 북한의 남녀평등수준에 대한 탈북자들의 응답

질문항목	아니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함	39.4	21.8	38.8
여성은 국가에 의해 해방됨	31.5	26.5	42.0

32) 임순희(2005),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 187쪽 참조
 33) 이미경(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 51쪽 참조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것은 남아선호사상의 축소와도 관련이 있다. 태아 성감별을 통한 여아 낙태로 인해 셋째, 넷째 자녀로 갈수록 남아의 수가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여아 낙태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남아선호는 다산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아선호는 출산을 감소와 함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아들만 낳은 여성을 오갈 데 없는 ‘국제 고아’라고 비아냥”거리는 현상까지 생겼는데, 이는 “남성을 거쳐 분배되는 사회적 부가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⁴⁾

라. 임신 · 출산/복지/보육

북한에서 출생률은 1990년 초에는 1000명당 21.8명이었던 것이 1997년 11명으로 50%나 감소하였다.³⁵⁾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북한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998년 김정일이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들에게 국가적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조치를 지시³⁶⁾한 이래로 여맹 회의³⁷⁾, 어머니대회³⁸⁾, 노동신문³⁹⁾ 등을 통해 다산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다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모성영웅제도’가 있다.⁴⁰⁾ 『조선녀성』에는 세쌍둥이를 낳은 여성에게

34) 최진이(2004), “여성 ‘기본 존엄’ 보장 안 되는 왜곡된 성문화 만연”, 『월간 말』 2004년 9월호, 79쪽 참조; 앞의 박현선(1999)의 연구에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데 68.7%가 동의하였으며, 이는 80년대 탈북자나 90년대 탈북자 사이에서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박현선(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86쪽 참조) 최진은 1999년 탈북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만 해도 첫 자식으로 아들을 못 낳으면 발언권이 서지 않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아들을 반대하는 추세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남아선호사상은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 Andrew S. Natsios(2003), 「북한의 기아」, 다홀미디어, 101쪽 참조

36) 통일부(<http://www.unikorea.go.kr>)>북한정보>변화동향,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58주년 동향”, 2004.8.10 참조

37) 조선중앙통신사(2005), 「조선중앙연감」 제58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137쪽 참조

38) 조선중앙통신사(2006), 「조선중앙연감」 제59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157쪽 참조

39)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58주년 노동신문 사설(2004.7.30), ‘여성들은 선군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혁명가가 되자’는 자식을 많이 낳아 선군조선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 것이 여성의 책임적 본분이라고 쓰고 있다. 통일부(<http://www.unikorea.go.kr>)>북한정보>변화동향,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58주년 동향”, 2004.8.10 참조

40) 『조선녀성』 1999년 1월; 한국여성연구소(2005), 「개정판 새 여성학강의」, 동녘, 341쪽에서 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은장도와 금반지를 보내주거나, 수많은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였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한 산후 1년 이내의 산모와 4세 이하 어린이에게 흰쌀을 우선 배급하고, 쌀가루를 배급하며 형제가 3명 이상인 경우 탁아소에 우선 위탁될 수 있도록 하고, 4자녀 이상인 여성에게 특별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⁴¹⁾

남한에서도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에 달했다가 2006년에는 1.13명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1.8명 수준으로, 결혼건수의 감소, 만혼 경향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각 시도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 차원에서 시도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세액공제, 보육료 감면, 출산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이 행해지고 있다.

여성이 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산전산후휴가는 북한 150일, 남한 90일이다. 북한에서는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유급휴가로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산전산후보조금과 함께 식량이 공급된다.⁴²⁾ 남한에서는 2001년 이전까지 60일이었던 것이 90일로 연장되었다.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90일간 최대 405만 원을, 대규모 기업은 30일간 최대 135만 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최초 60일분에 해당하는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전후휴가 이용자 중 25.8%만이 육아휴직을 이용한다. 재원이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은 여성 취업의 특성상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전체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은 1.9%에 불과하여, 남한에서도 육아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인용: '모성영웅'은 많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많은 아이들을 길러낸 '어머니'에게도 붙여지는 칭호이다. '모성영웅 따라배우기 운동'의 주인공으로 2004년 12월에 '모성영웅' 칭호를 받은 서혜숙은 고아 33명을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조명애가 누굽니까? 여자는 세차야지!",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5. 9. 20 참조

41) 『조선여성』 2000년 1월; 한국여성연구소(2005), 「개정판 새 여성학강의」, 동녘, 341쪽에서 재인용

42) 백과사전출판사 편(2000), 「조선대백과사전」, 13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274쪽 참조

남북한 여성들의 삶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다르다. 북한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은 개인적 의미 이전에 ‘혁명의 후비대’를 양성하는 것이며, 육아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담당한다. 남성은 가사노동을 비롯한 육아에 잘 참여하지 않지만, 탁아소와 유치원 등 국가의 보육시설이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로 인해 북한여성에게 육아는 남한여성보다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 이전 시기의 어린이들은 탁아소에서 양육하며, 부모가 없는 고아는 4세 미만인 경우 육아원, 4세 이상인 경우 애육원에서 교육한다. 북한의 탁아소는 탁아기간에 따라 일탁아소, 주탁아소, 월탁아소로 나뉜다. 일탁아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탁아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탁아소는 1개월간 어린이를 돌본다. 주탁아소와 월탁아소는 주로 여성기자, 여성교원, 여성연구자, 여성예술가, 교대작업을 하는 여성 노동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한다.⁴³⁾ 탁아소의 종류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곳이 다르다. 중앙의 탁아소는 중앙예산으로, 시·도·군의 탁아소는 지방예산으로 지원하며, 농업부문의 협동농장 탁아소는 공동소비자금으로 지원한다.⁴⁴⁾ 따라서 운영주체에 따라 재정 형편에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전적인 지원 하에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남한에서 보육은 보호자의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최근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녀 등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2006년 현재 해당 사업장 775개소 가운데 233개 사업장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으며, 132개 사업장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위기는 탁아소 운영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제난 이후 탁아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육아의 부담을 전적으로 여성이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은 생계유지와 함께 더 커진 육아부담을 맡게 되었다. 더구나 식량난이 북한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가

43) 리용복(198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양옥승·오미경(1995), “북한의 영유아 보육 정책”,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집, 156~7쪽에서 재인용

44) 성영혜·김수정(2001), “북한 보육제도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2호, 115쪽 참조

족들에 대한 돌봄노동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식량난 동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망하였는데, 특히 어머니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음식을 양보하여 건강 악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여성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한 공기의 죽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양보”⁴⁵⁾하면서 다른 가족들을 먼저 먹이고 음식이 남으면 겨우 한 끼니를 때우거나, 4~5일씩 굶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하는 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남편과 아들은 세대주,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먼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⁴⁶⁾

식량부족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영양실조는 임신·출산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 영양부족과 그 후유증은 불임을 증가시키며, 임신 기간의 충분한 영양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유산, 사산이나 미숙아, 저체중아 출산을 초래하기 쉽다. 영양부족 상태에서는 임신 자체가 임산부의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출산 후의 산후조리 역시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우므로 출산 이후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 불법낙태로 인한 건강 악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수의 감소에 따라 출산이 장려되면서, 병원에서 낙태나 피임 시술이 불가능해졌으며 그로 인해 불법 낙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시술의 경우 비밀리에 의사를 집으로 불러 마취도 거의 하지 않고 수술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⁴⁷⁾

마. 교육

북한의 교육은 ‘혁명의 후비대’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으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가정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가정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자녀교양의 첫째가는 담당자는 어머니”⁴⁸⁾로, 자녀를 “강성대국건설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는”⁴⁹⁾ 일을 여성의 ‘본분’으로 자주 강조하고 있다.

45) “당의 참된 딸로 사는 행복”,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임순희(2005),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 173쪽에서 재인용

46) 임순희(2005),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 173~4쪽 참조

47) 임순희(2005),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 174~5쪽 참조

48) 백과사전출판사 편(2000), 『조선대백과사전』 16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172쪽 참조

49) 조선중앙통신사(2004), 『조선중앙연감』 제57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150쪽

북한의 교육제도는 학교 전 교육으로 유치원 2년(낮은반 1년, 높은반 1년)이 있고, 초등교육으로 인민학교 4년, 중등교육으로 고등중학교 6년이 있다. 남한은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9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한 반면 북한은 유치원 높은반부터 고등중학교까지의 11년이 의무교육인데, 국가가 교육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197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의무교육 이후 기사, 전문가를 키워내는 4~7년 과정의 대학과 연구원 3~4년, 박사원 2년의 교육과정이 남한의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해당한다. 이외에 3년 과정의 교원대학과 고등전문학교 과정이 있다.⁵⁰⁾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는 여학교가 없다. 성별에 따라 학급을 분리하는 남녀 분반은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는 남녀공학이다. 사회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의 협력에 의하여 발전되는 만큼, 학교교육에서부터 남녀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와 품성을 형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학교와 여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성불평등의 소산이라고 본다.⁵¹⁾ 그러나 북한의 교육에서 성역할 분리가 해체되었다거나 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한에서 최근까지 '기술', '가정'을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에게만 가르쳤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성별에 따른 전통적 역할을 교육하는 과목을 분리하여 가르치고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여학생은 옷 만들기, 음식 만들기, 육아, 간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녀학생 실습교육'을, 남학생은 '공장실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사회적 노동에서도 가사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지위는 남존여비의 유교적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서 체대한 남학생에게는 나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동지'라고 칭하면서 존댓말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학교 청소 등 학교에서 요구되는 노력봉사도 대부분 여학생의 몫으로 돌아간다.⁵²⁾ 또한 남녀간 학교교육에의 접근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년간의 의무교육제도로 인해 여학생

50) 체제통합연구회 편(2006), 「남북한 비교론」, 명인문화사, 305쪽 참조

51) 백과사전출판사 편(1997), 「조선대백과사전」 5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104쪽 참조

52) 손봉숙(1993),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공보처, 127~8쪽 참조

도 고등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 진학이나 유학의 기회는 여학생에게 평등하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 탈북자들로부터 각 대학의 여학생 입학비율을 평균 30% 이하로 한정시켜 여성들의 대학 진학을 제한하고 있다거나,⁵³⁾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이 아주 적어서 대졸 여성은 엘리트로 대접받는다⁵⁴⁾거나, 제대군인이 대학에 가기 쉬운 현실, 실력보다는 당성을 우선하여 대학신입생을 선발하는 풍조로 인해 남학생에게 대학 진학의 길이 더 개방되어 있으며, 여학생은 유학생 선발에서 아예 제외된다⁵⁵⁾는 등의 증언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의 여성 진학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학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은 2006년 현재 49.1%로 절반에 가까우며, 석·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도 4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북한과 유사하며, 전공별 편중이 심하여, 예컨대 석사과정 여학생 중 38.7%가 교육계열 학생이다.

<표 5> 남한의 대학원 학생 중 여학생 비율 (2006)

	여학생 비율(%)	여학생(명)	남학생(명)
석사과정	47.7	116,283	127,550
(공학계열)	13.8	4,739	29,553
(교육계열)	72.4	45,082	17,175
박사과정	33.3	15,375	30,821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북한여성들은 학교교육 이후에도 사회교육에 참여한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조선직업총동맹(직맹)’에, 30~61세의 협동농장원 여성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에 소속된다. 대표적인 여성단체는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으로, 18세 이상의

53) 최진이(2004), “여성 ‘기본 존엄’ 보장 안 되는 왜곡된 성문화 만연”, 『월간 말』 2004년 9월호, 78쪽 참조

54)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2001),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79쪽 참조

55) 손봉숙(1993),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공보처, 128쪽 참조

여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주된 구성원은 가정주부들이다. 여맹원 수는 2002년 현재 약 120만여 명에 달하며, 기관지 『근로녀성』, 기관잡지인 『조선녀성』을 발간한다.⁵⁶⁾ 여맹의 구체적 임무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확립, 여성 사상혁명 강화를 통한 여성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사업 추진, 공산주의 교양 강화, 천리마 작업반 운동, 후대에 대한 교양 강화, 인민군 원호사업 강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에서 여성들이 따라 배워야 할 역할모델로 제시되는 인물은 김일성, 김정일의 어머니인 강반석, 김정숙이다. 이들이 『조선녀성』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이상적 여성상으로 그려진 것은 1970년대 말 이후이다.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여성 혁명조직인 반일 부녀회를 조직한 ‘여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을 길러낸 ‘어머니’, 시부모에게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이 강조되었다. 『조선녀성』에는 강반석의 행적을 기리는 고정란이 생겼으며 강반석 따라배우기는 여맹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역시 혁명투사인 여전사, 혁명가의 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지도자인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특히 김정숙의 경우는 지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 더욱 강조되었다.⁵⁷⁾ 강반석, 김정숙이 보여주는 여성상은 북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바를 잘 드러내준다. 여성은 공산주의 수립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여야 하면서, 동시에 가정 내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성역할 또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도되거나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여성교류의 출발은 7.7 선언이후 남북교류 및 협력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56) 한국여성연구소(2005), 「개정판 새 여성학강의」, 동녘, 344~5쪽 참조

57) 이미경(2004),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제28권 제2호, 150~5쪽 참조

이루어지는 가운데, '88년 이후 학생, 학자, 제반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언론기관, 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 제의가 이루어졌고 주로 여성단체나 여성 종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여성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제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남한주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시행 이후 2007년 3월말까지 신청 29,087건, 승인 28,824건, 성사 31,20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성사된 분야로는 경제분야가 18,312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관광 3,231건, 교통통신 2,430건, 대북지원 2,120건, 경수로 1,114건, 종교 252건, 언론출판 236건, 체육 235건, 학술 156건 등이다. 남북한 여성 교류의 경우 1991년부터 2007년 5월 현재까지 총 22건이 성사되었는데, 남한과 북한이 여성교류가 성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같은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여성교류 현황

첫째, 1991~1993년간 4차례에 걸쳐 개최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와 관련한 것이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의 경우 오랫동안 기독교여성운동을 해온 이우정씨가 1990년 여름 일본부인회의 시미즈 스미꼬 회장을 만났을 때 북한여성과의 만남을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부인회의와 일본 YWCA연합회, 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 부인교풍회 등 일본 기독교관련 여성단체가 아시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지 않고는 아시아의 평화가 없다는 인식하에 향후 남한-북한-일본 여성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미나를 남북한 여성계층에 제의함으로써, 1991년 1월(1차, 동경), 1991년 11월(2차, 서울), 1992년 9월(3차, 평양), 1993년 4월(4차, 동경)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1차 세미나의 주제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었다. 당시 세미나에는 남·북한 및 일본 여성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종군위안부 보상,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 조·일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으며 이 모임에서 이우정씨가 제2차 세미나의 서울 개최를 제안했고 이를 받아 여연구씨(최고인민회의 부의장)가 서울 다음에 평양 개최를 제안하였다. 동 제안에 따라 1991년 11월과 1992년 9월 서울여성세미나와 평양여성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91년 11월 25~30일까지 개최된 제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

성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선옥 해외동포 영접부 부부장, 정명순 조평통 참사, 최옥희 평양신학대학 대학원생, 홍선옥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 등 15명의 대표단은 판문점을 거쳐 남한에 왔으나 11월 28일 북측 참가자의 신변위협을 구실로 조기 귀환을 발표하고, 11월 29일 이대방문 및 문익환·임수경 가족면담이 거절되자 11월 28일 오후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당초(11월 30일)보다 하루 앞당겨 귀환하였다.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는 1992년 9월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는데, 참가인원은 남북한 및 일본여성대표 25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주제로는 ‘민족의 대단결과 여성들의 역할’,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이었다. 동 세미나의 성과로는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남북한 및 일본이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한 점과 ‘평양여성세미나’를 계기로 남한-북한-일본에서 돌아가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의 정례화를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그 후 1993년 4월 22~29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아세아 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여기에는 남북한 및 일본여성대표 1,00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남한측은 이우정 국회의원과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김운옥 기독교 여성평화연구원장이 북한에는 최금춘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씨와 홍선옥 평화군축연구소 실장 등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 세미나를 통해 북측에서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문제를 앞세우는데 비해 남한측은 중군위안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부터 하자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 후 1993년 10월 11일 이우정 국회의원 등 서울여성세미나 실행위원회가 제5차 “여성세미나” 개최 장소를 서울에서 ‘민족화해와 여성’이란 주제로 북한의 여연구에 19명의 대표를, 일본은 시미즈 스미코에 19명을 초청할 것을 확정하고 북한측을 초청하였으나 11월 1일 ‘여성세미나’ 북측 실행준비위원회가 일본을 통해 동 세미나를 1994년 4월경으로 연기를 요청해왔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모임에 관해서이다.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여성이 처음 만난 것은 1993년 10월 21~23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2차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남·북한 등 7개국 대표 참석하였는데 여러나라가 공동으로 참석한 것이 북한측을 참석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컸다. 그 이후 1993년 11월 7일 북한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 대책위(「종태위」)가 ‘일본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 발생한 중군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주제로 11월 7일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하였는데, 당시 남·북한,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중군위안부 관련 민간단체가 참석하였다. 남한측은 이효재씨, 윤정옥씨 등 공동대표 2명이 참석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오무환씨, 강정길씨, 최금춘씨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그 후에도 중군위안부와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시기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1998년 10월 2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 여성’ 3자 회합, 2000년 3월 30일~4월 1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상해 국제 심포지엄’, 2000년 7월 개최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마닐라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모임, 2000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일본천황 공동기소’에 관한 모임이다. 만남의 대상은 남측은 정대협, 북측은 종태위 관계자였다.

셋째,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문제와 관련하여서이다. 2000년 6월 13~15일까지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1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골자는 ① 자주적인 통일 추구 ② 남북측의 상호통일방안에 대한 존중 ③ 이산가족, 친척방문의 확대 등 인도적인 방향 모색 ④ 경제 교류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이다. 남북한 여성들은 6.15 공동선언 실천문제를 주제로 삼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8월 평양에서 개최한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이다. 당시에 남북측이 만났던 대상은 남측은 민화협 통일연대여성위원회 이효재 씨 등 22명, 북측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최창숙씨, 조선여성협회 서옥선씨, 민화협 여성부 박영희씨이다. 2002년 10월 금강산에서 만났던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에서는 남한의 경우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위원회 353명이 참석하였고, 북측은 조선여성협회 관계자였다. 2005년 9월에 평양에서 개최한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에서는 남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 약 100명, 북측은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관계자이다. 2006년 3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에서 남측은 6.15 남측위 여성본부 관계자 30명, 북측은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2007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여성대표자모임’에서는 남측은 남측위 여성본부 관계자 9명, 북측은 6.15 북측위 여성분과위원회 관계자가 만났다.

나. 개별적 주제를 지닌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1999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여성교류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남측은 우리민족서로돕기회의 이길녀 회장 등 6명, 북측은 조선여성협회 홍선옥씨 3명이 참석하였다.

2000년 6월 남북한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평양에서 남측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 등 여성계 대표와 북측의 여원구 등 북측 여성계 대표들이 만났다.

2000년 10월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3인이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기념행사 참관차 방북시’ 조선여성협회 홍선옥 등 3인을 만났다.

2000년 12월 중국 연변에서 개최된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관련 학술회의’에서는 남측은 이대 장필화 교수 등 10명, 북측은 김일성종합대학 궁영숙 교수 등 4명이 참석하였다. 2001년 2월 21일 평양에서 남측의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김윤덕씨 등 10명과 북측의 조선여성협회 홍선옥씨 등 2명이 ‘남북여성하나되기’ 토론회’에서 만났으며, 2001년 9월 캐나다에서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들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에 남측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우정 씨 등 7명, 북측은 조선여성협회 홍선옥 씨 등 5명이 만났다.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전체 내용은 <표 6>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6>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일시	장소	추진주체	북측대상자	내용
'91.1	동경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등 3명	여연구(최고인민회의부의장)등 3명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일시	장소	추진주체	복측대상자	내용
'91.11	서울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등 3명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등 15명 방남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
'92.9	평양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회)등 30명 방북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등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93.4	동경	이우정(국회의원)등 11명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등 13명	제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아세아 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93.10	동경	정대협	북한중군위안부및 태평양전쟁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제2차 중군위안부 아시아연대의 참가(10.20~25)
'93.11	평양	정대협 (이효재등 2명)	총대위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참가
'98.7	동경	정대협 (정진성등 4명)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홍상진 등)	일본의 전시하의 강제연행에 관한 동경심포지움 참가
'98.10	북경	정대협 (윤정옥등 6명)	총대위(부위원장 박명옥)등 8명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 여성의 3자 회합 (10.2)
'99.9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 (이길녀등 6명)	조선여성협회 (홍선옥등 3명)	남북여성교류협의
'00.3	상해	정대협 (정진성등 10명)	총대위 (박명옥등 3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상해 국제 심포지움 참가(3.30~4.1)
'00.6	평양	이희호 여사등 여성계 대표	여원구 등 복측 여성계 대표	복측 여성계 대표 접촉
'00.7	필리핀	정대협 (윤정옥등 7명)	총대위 (황호남서기, 정남영 등 4명)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마닐라 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모임 참가
'00.10	평양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등 3인	조선여성협회	노동당기념행사 참관차 방북시 접촉
'00.12	연변	장필화등 10명	김일성종합대학(공영숙교수등 4명)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관련 학술회의

일시	장소	추진주체	복측대상자	내용
'00.12	동경	정대협 (윤정옥등 150명)	종대위 (홍선옥대표, 정남영, 황호남 등 11명)	「2000년 일본군 성노예진범 국제 법정」에 일본천황 공동기소
'01.2	평양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김윤덕등 10명)	조선여성협회 (홍선옥등 2명)	「남북여성하나되기」토론회 개최 (2.21)
'01.8	평양	민화협, 통일연대여 성위원회 (이효재등 22명)	조선민주여성동맹 (최창숙) 조선여성협회 (서옥선) 민화협 여성부 (박영희)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 통일토론회
'01.9	캐나다	이우정(평화를 만드 는 여성회)등 7명	홍선옥(조선여성협회) 등 5명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연대 하는 여성들 회의 참가
'02.10	금강산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여성위원 회(353명)	조선여성협회관계자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 한 남북 여성 통일대회
'05.9	평양	한국여성단체연합 (100명)	6.15 북측위 여성분과 위원회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06.3	금강산	6.15 남측위 여성분 부(30명)	6.15 북측위 여성분과 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여성대표자회의
'07.5	평양	6.15 남측위 여성분 부(9명)	6.15 북측위 여성분과 위원회	남북여성대표자모임

다. 소결

통일부에서 수집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여기서는 성사된 여성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실제 남한 여성계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여성교류를 제안 한 바 있다. 김원홍⁵⁸⁾의 연구에 의하면 1989년~1998년 7월까지 남한여성들이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낸 건수는 총 49건으로 이중 성사된 건수는 총 17건으로 분석

58) 김원홍(1997),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쟁점과 대책」, 한국정치학회주최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1~22쪽 참조

하고 있다. 1998년까지 남측이 교류를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내용으로는 ① 의류 및 패션전시 ② 여협 전국여성대회참석 요청 ③ 꽃꽂이 전시 ④ 종교 행사 참석 및 방문 ⑤ 수공예품 교환 전시 ⑥ 노천명 시비 북한 건립 등이 있다. 또한 성사는 되었으나 여성교류로 분류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1995년 이루어진 '판소리밤연주'(안숙선 국립창극단원), 1995년, 1996년 실시된 One Korea Festival 참석(김춘옥 겨례하나 합창단장) 등이 있다.

그동안 북측은 특히 제3국과 함께 공동 행사한 ①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 부터는 6. 15 공동선언 실천문제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남북한 여성교류가 성사는 되지 않고 <표 6>에서 여성교류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북측은 예술분야나 음식경진대회에도 관심이 많아 보였다. 한 예로 1991년 한국부인회측이 제의한 '남북여성 토속음식 경진대회'를 들 수 있다. 1991년 1월 한국부인회측은 남북여성 토속음식경진대회 및 공예품전시회 개최와 같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성애 위원장에게 제의하였고, 그 후 '91년 3월 20일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 강점숙 서기장이 다시 한국부인회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앞으로 서신을 발송하여 3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한국부인회가 제의한 문제들 뿐 아니라 투옥된 애국여성들, 민주인사, 통일지사들의 석방문제를 함께 토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장소는 평양이어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남측 정부에서는 정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서신을 북측에 되돌려 보냄으로서 결렬된 적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남북여성교류를 성사된 예와 실패한 예를 분석하여 볼 때 첫째,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계획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의지와 인내 그리고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방법상으로는 남북왕래 행사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제3국 접촉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과 개인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사회의 변화가 없는 한 초기단계에는 북한이 선호하는 대상, 주제, 행사 등을 자신있게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경우 다소 개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북한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현실상황에서 북한에

관한 정보나 자료수집이 한정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 이후의 여성정책을 마련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남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심도 깊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 및 자료와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남북한 여성교류가 미흡하지만 우리는 1990년 10월 3일 급속하게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했던, 독일의 통일 후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성문제를 보면서 우리 남북여성은 통일 이후 바람직한 여성정책 구현을 위해 남북한 여성교류가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삶의 주책임자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남북한 여성들이 만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언어·문화적 갈등문제이다.⁵⁹⁾ 이를 위하여 통일 전에 언어·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9) 북측에서 여성단체 회원이 북한 여성을 만나면서, 북한 여성들의 경우도 생활의 주체자란 측면에서 남한의 여성들과 흡사했으나, 용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 예로 남한의 '남편'이란 용어가 북한의 경우 '주인 어른', 남측의 '괜찮습니다'가 북측의 경우 '일없습니다' 등을 소개하고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기선미 국장).

III

남북한 여성용어 비교

1. 정치
2. 경제
3. 가족
4. 임신·출산/복지/보육
5. 교육
6. 기타
7. 소결

1. 정치

“남녀평등”, “남녀평등권”과 같은 용어는 남북한 모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 「조선대백과사전」은 “남녀평등”을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 및 정치적 권리에서 차별없이 같은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남녀평등권은 1946년 7월 30일 채택된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 법령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 및 임금, 사회보험 및 교육 등 정치·경제·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북한에서 남녀평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결혼과 이혼에서의 평등권 규정도 두고 있다. 자유결혼 및 자유이혼의 동등한 권리, 남녀의 동등한 상속권을 비롯, 일부다처제의 금지, 여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남한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같이 남녀평등 원칙을 한 곳에 모은 법률은 없다.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조항, 민법의 혼인·상속 관련 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그리고 지금은 폐지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에 흩어져 있다.

“여성문제”, “남존여비사상”은 낱말을 원래의 음 그대로 쓰는 북한의 원음법칙에 따라 “녀성문제”, “남존녀비사상”과 같이 표기한다. “여성운동” 또한 “녀성운동”이라고 표기하는데, 남한보다 의미가 넓다. 남한의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권리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정의되지만,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여성들이 벌리는 사회정치운동>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여 여성의 권리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운동 주체가 여성인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녀성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여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절박한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여성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① 여성을 민족적·계급적 연속에서 해방시키는 것 ② 남성과 동등한 사회·정치적 권리 부여,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③ 여성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라고 한다.

국제협약이나 기념일을 표현하는 용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북한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없앨데 대한 협약”으로 표기하며, 매년 3월 8일인 “세계여성의날”의 북한말은 “국제부녀절”이다.

2. 경제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질적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분야에서 용어 이질화가 큰 편이다. 특히 동일한 표기이나 의미가 다른 동철이의어가 종종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과 관련된 대표적 동철이의어는 “봉사”와 “부업”이다.

남한에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을 뜻하는 용어인 “봉사(奉仕)”는 북한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북한에서 “봉사”란 “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공급, 편의봉사, 도시경영, 려객운수,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체신, 보건, 문화, 후생 등 부문의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노동이다. 그러나 “봉사로동”은 사회적 생산물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상 비생산적 노동에 속한다. “봉사로동”에는 “목욕, 리발, 미용, 빨래와 같은 편의봉사업종”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동은 가사노동과 유사하여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하였던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편의봉사업은 여성들이 주로 담당한다.

“부업” 또한 남북한의 의미가 매우 다르다. 남한에서 “부업”은 “본업 외에 여가를 이용하여 갖는 직업”으로, 대개 주 수입원이 있는 사람이 시간을 활용하여 보조적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일이나, 가정주부가 가사노동 이외에 행하는 부수적 소득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부업”은 “가내작업반”으로 조직되는 집단적 노동의 한 형태이다. “가내작업반”은 공장에서 자재를 가져다가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조직형태인데,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소비품을 생산하고 이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조직된다. 대개 부양가족, 주로 전업주부가 중심이 된다.

노동력의 성별 분리 배치에 따라 여성 노동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편의봉사와 가내작업반은 비공식부문에 속한다. 따라서 공식부문에 비해 가치가 낮게 평가되

며, 적은 식량배급을 받고, 연금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나이가 많아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년로연금”은 노동자, 사무원, 군인만이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 연령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여자가 5년 빠르다.

“모성보호”는 북한에서 “녀성로동에 대한 특별보호”라고 칭해진다. 남한에서는 모성보호 적용 대상이 여성 전체에서 임신부로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북한에서 “녀성로동”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삼아 여성노동자들은 진동이 심하거나 냉하거나 무거운 짐을 다루는 작업, 잠수함 및 잠함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임신부나 유아를 가진 여성은 야간노동이 금지된다. 원음법칙에 따라 북한에서 여성노동자는 “녀성로동자” 또는 “근로녀성” 등으로 칭해지며, 노동력 있는 여성을 총칭하는 단어로는 “녀성로력”이 쓰인다.

3. 가족

“가족”, “약혼”, “결혼”, “법률혼”, “사실혼”, “근친혼” 등은 남북한 공히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며, “동성동본불혼”은 북한에서 “동성불혼”, “이혼”은 “리혼”이라고 한다. 근친혼의 범위는 북한이 남한보다 다소 좁아서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간 결혼이 금지되는 근친혼에 속한다. 북한의 “동성불혼(同姓不婚)”은 “성(姓)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혼인하지 않는 풍습”으로, 성과 본이 모두 같은 경우의 혼인만을 금지하였던 남한의 “동성동본불혼”보다도 넓은 범위이다. “리혼”은 원음법칙에 의한 표기이며, 협의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오직 재판이혼만 가능하다는 점이 남한과 다르다.

남한에는 없는 북한 가족법상의 용어로 “부부의 인격관계”, “부부의 재산관계”라는 표현이 있다. “부부의 인격관계”는 부부간의 인격적 권리의무관계를, “부부의 재산관계”는 재산에 대한 부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민사법사전」은 북한 가족법상 부부가 인격관계와 재산관계에서 평등하다고 하고 있다. “가정재산”도 북한에만 있는 표현이다. 이는 남한말 “가산(家産)” 또는 “가재(家財)”와

비슷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가정재산”은 “한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로동에 의한 분배나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과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으로 이루어지며, 가족 구성원이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개인적 용도로만 쓰이는 재산은 제외된다. 후자는 가정성원의 “개별재산”이다. “가정재산”은 이혼과 같이 가족 구성원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조)부모”, “(손)자녀”, “직계”, “방계”, “존속”, “비속” 등은 남북한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나, 북한에서 아내는 “안해”, 결혼한 이모는 “이모어머니”, “이모부”는 “이모아버지”라고 하며, “이종사촌”은 “이모사촌”이라고 한다. 남한의 “계모” 또는 “의붓어머니”는 북한에서 “후어머니”라고 하며, “장모”는 “가시어머니”,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는 “뜨게부부”라고 한다. 연애결혼은 “맞혼인”이라고 한다. “독신녀”, “독신주의” 같은 단어들은 남북한 동일하나, “미혼모” 또는 “비혼모”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남한보다 훨씬 부정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지만 은어로 “해방처녀”라는 말을 쓴다. 이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거나 혼전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칭하는 말이다.

남한말 “간통”은 북한에서도 사용하나 “부화(浮華)”를 더 많이 쓴다고 한다. 남한에서 간통이 유배우자의 혼외 성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는 “간통”을 “남편이 있는 여자와 그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비도덕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성의 혼외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화”는 좀더 넓은 의미로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남녀간의 비도덕적인 육체적 관계” 전반을 지칭한다.

남한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해당하는 북한 용어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이다. 이는 북한의 3대 기술혁명 중 하나로,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 “현대적인 부엌세간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주는 것” “세탁소, 옷수리소, 양복점 등 편의봉사시설들을 널리 조직하고 사회적봉사를 개선하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사업을 더욱 잘하는것”으로 구성된다.

“가장(家長)”이라는 표현은 북한에도 존재한다. 「조선대백과사전」은 “가정을 대표하는 웃어른”을 “가장”으로 정의하면서, 가정생활에서 불평등을 낳는 사회·경제

적 기초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과 가족성원간의 불평등은 사라졌다고 하고 있다. 남한에서 “가장”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부양의 의미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말 “호주(戶主)”와도 유사하다. 북한에서는 호적제도가 오래 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호주”는 남한과 같은 의미는 아니고, “한 집안의 살림을 책임진 주인” 또는 “<일정한 지역이나 단위안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정권기관이나 그 책임일군>을 비겨 이르는 말”로 쓰인다.

주민등록증은 북한에서 “공민증”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공민증제도는 194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신병자와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제외한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공민증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임신·출산/복지/보육

“임신”, “양육”, “산아제한”, “보육기(保育器)”, “조산원”은 남북한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북한의 “조산원”에 해당하는 남한말로는 “산과” 또는 “조산원”이 있는데, 어떤 일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남한에서는 주로 “산과”라는 표현을 쓰지만 북한에서는 “조산원”을 쓴다. “월경”, “달거리” 또한 남북한 용어가 같다. “폐경”은 표기상의 차이로 “폐경”, “월경폐지”라고 쓰며, 말다듬기로 사전에는 “달거리멧기”라고도 제시되어 있다. “피임법”은 북한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나, 북한에서는 “임신조절법”이라고도 한다.

인구수 대비 출생자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출생률”은 남한과 북한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나, 가임기 여성 대비 출생자수 비율을 칭하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북한에서는 “산생률(產生率)”을 사용하며, 남한에서는 “15세부터 45세까지 가임 여성의 평균 인구 1,000명당 출생 수”를 의미하는 “특별출생률(特別出生率)”을 사용한다.

북한에서 다산을 권장하기 위한 칭호로 “모성영웅”이라는 용어가 있다.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는 여성까지 포함하는 표현으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04년에 모성영웅 칭호를 받은 서혜숙은 고아 33명을 길렀다고 한다.

“보육”은 표현은 같지만 남한과 북한의 보육 정책 차이로 인하여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 남한에서 “보육”이 어린이를 돌보아 기쁨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북한에서 “보육”은 탁아소에서 어린이를 길러내는 사업을 의미한다. 북한의 보육시설은 남한과 체계가 많이 다르다. 한때 집단 수용을 연상시켜 육아의 사회화에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했던 “탁아소”는 북한에서 유치원 이전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요즘 남한에서는 “탁아소” 대신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에서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보육원(保育院)”, “애육원”은 남한의 “고아원”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남한말 “보육교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보육원(保育員)”, “교양원”이 있다. “보육원(保育員)”은 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담당한다.

노인을 수용하여 돌보는 기관을 의미하는 “양로원”은 남북한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나, 북한의 양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이 다르다. “사회보장제”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표현은 같지만 남한에서는 질병, 재해, 실직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까지 총칭하는 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적 부담으로 보장하여주는 제도”라고 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양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산전산후휴가”는 남한과 북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남한의 “산전후휴가급여”에 해당하는 북한 용어는 “산전산후보조금”이다. “산전산후보조금”은 “산전산후휴가를 받는 여성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지불하는 일시적 보조금”으로서 “국가사회보험”에서 지급된다.

북한에서는 국가시책상 무상치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보험금으로 운영하는 남한의 “의료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북한말은 없다. 북한에서 편의봉사의 일종인 “의료봉사”는 “의료일군들이 의학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의료상 혜택을 주는 봉사”를 의미하며, “의료방조”라고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행하는 자원봉사의 의미인 “의료봉사”와는 다르다.

5. 교육

교육분야에서 용어 차이는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념의 차이와 교육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북한사회에서 어린이는 “혁명의 후비대(後備隊)”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혁명의 후비대”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사업을 계승할 역량, 혁명 위업의 계승자를 뜻한다. 북한에서 어린이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어린 시절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어렸을 때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성장 후에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린이 교육을 위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들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질서와 사업체계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문이 된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어린이,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용어가 “자녀교양”과 “버릇교양”이다. 이는 남한말 “가정교육”, “도덕교육”과 유사한 용어들인데, 「조선대백과사전」 뜻풀이를 보면,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교육이념이 용어 설명에 반영되어 있다. “자녀교양”이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버릇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정교육의 일종으로, 자녀를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이할 만한 것은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자녀교양의 일차적 담당자를 어머니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자녀의 성격, 습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면서,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 밖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도덕교육은 “버릇교양”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생활과 행동 관습을 키워주기 위한 교양”을 의미한다. ‘학습을 열심히 하고, 공산주의적 도덕을 잘 지키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는 혁명적 생활기풍을 세우는’ 데 있어 버릇교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북한의 교육분야 용어들은 성차를 강조하면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남녀공학”의 반대말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남녀분학” 또는 “남녀별학”이다. 「조선대백과사전」은 남녀공학이 성평등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남녀간의 협조를 통하여 사회가 발전되는 만큼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남녀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녀가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남한에서의 “가사실습”에 해당하는 “녀학생실습교육”은 “여성의 특성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설명되고 있다. 교과 내용은 옷, 음식 만들기, 수예, 육아, 간호 관련 지식으로, 남한에서 6차교육과정까지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가정” 또는 “가사” 교과목 및 “교련” 교과목의 여학생 과정과 유사하다. 여성들을 “나라와 가정의 알뜰한 살림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녀학생실습교육”은 가정에서의 노동 뿐 아니라 사회적 노동에서도 여성에게 알맞는 분야가 따로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다.

6. 기타

남한말 “동성애”는 북한에서도 사용하나, 북한의 뜻풀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동성애”는 “남은 생활양식에서,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변태적인 사랑”으로, “동성결혼” 역시 “기형적인 변태적결혼”으로 정의된다. 북한의 “동성결혼(同性結婚)”에 해당하는 남한말은 “동성혼(同性婚)”이다. 남한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남북한 모두 동성간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성희롱을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언어화되지도 않은 단계여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북한말은 없다. 북한에서는 “강간죄와 복종 관계에 있는 녀성간음죄”를 합하여 “성적 범죄”라고 한다. 강간죄에는 15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간음죄가 포함된다. 남한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적용되는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북한이 규제 범위가 더 넓다. 북한에서 “강간”은 “강제적수단을 발동하여 비법적으로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범죄의 소추를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는 범죄를 의미하는 “친고죄”는 남한과 북한 모두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북한에서 친고죄는 현존하지 않는다. 1950년 형사소송법에서는 강간죄가 경상해죄, 구타죄, 명예훼손죄 등과 함께 친고죄로 규정되

어 있었으나, 1974년에 친고죄 자체가 사라지면서 강간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 없이 소추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와는 달리 남한은 단순강간인 경우 고소가 필요하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상해 및 치상 등은 고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소결

앞서 설명하였듯 이번 남북한용어비교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비교 대상이 이철 동의어와 동철이의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관련 용어를 광범위하게 수록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철이의어(異綴異意語)이나 의미가 유사한 용어⁶⁰⁾라든가, 남북한이 동일한 의미로 동일 표현을 사용하는 동철 동의어 등은 이번 용어 비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로 인하여 어떤 분야의 남북한 동질성 또는 이질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심한지, 여성관련 용어가 동질적인 측면이 더 강한지 이질적인 측면이 더 강한지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남북한의 용어차이는 크게 분류해 보면 서로 다른 맞춤법, 이질적 사회체제,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의식 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표기상의 차이는 북한의 원음법칙에 따른 차이가 많다. 북한은 두음법칙을 반영하지 않고 낱말을 원래의 음 그대로 쓰기 때문에 “녀”, “리”, “로”를 “여”, “이”, “노”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또한 “폐”라는 표기 대신 “페”라고 쓴다. “녀성운동”, “리혼”, “로력”, “페경” 등이 이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말다듬기 정책에 따라 한자말 대신 순우리말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조어는 순우리말로 표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낯선 순우리말 표현들이 북한

60) 즉, 남한과 북한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유사한 어떤 것을 지칭하며, 표기도 다른 용어를 말한다. 예컨대 남한의 “가사실습”과 북한의 “녀학생실습교육”, 남한의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북한의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이 그러하다. 남한의 “가사실습”은 북한에 없고, 북한의 “녀학생실습교육” 또한 남한에 없다. 그러나 두 용어는 상당히 유사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용어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동철이의어와 이철 동의어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용어비교에서는 극소수만을 수록하였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어를 번역하는 경우에도 남한보다 길지만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예컨대 폐경을 의미하는 “달거리뻐기”가 말다듬기의 사례이다. 그러나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가 항상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회체제 및 제도상의 차이는 경제 분야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 경제체제는 “봉사”, “부업” 등과 같은 용어가 각기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양로원”, “사회보장제” 등은 동일한 표현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국가적 부담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국가의 무상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에서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용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모성보호” 대신 “녀성로동에 대한 특별보호”가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은 모성보호의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성동본불혼”과 “동성불혼” 또한 금지되는 혼인의 범위를 설정하는 제도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세 번째 측면인 혈족의 범위에 대한 의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셋째,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의식 차이는 표현의 차이와 의미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다는 의식변화의 시간차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동성애”가 사전상 “변태적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은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남한에서 “동성애”가 “동성연애”와 같은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 “간통”은 여성의 간통만을 의미하지만, 남한에서도 기혼남성의 간통보다 기혼여성의 간통이 사회적으로 더 비난받아왔다는 점에서 간통의 의미의 시간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성희롱” 또한 마찬가지이다. 남한에서도 성희롱이 규제 대상이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북한에는 아직 성희롱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아 이를 지칭할 용어가 생기지 않은 것이다. “친고죄”와 “호주”는 반대의 경우이다.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제도와 호주제가 남한에는 아직 남아있지만 북한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에서 “친고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호주”는 호적제도와 무관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남한에서도 호주제는 곧 사라질 예정이며 친고죄 또한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전체 남북한 여성용어 비교는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사전**을 참고하기 바란다.

IV

남북한 여성교류 확대 및 이질감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

1. 언어 등 남북한 여성간 이질화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2. 북한 여성에 대한 협력기금 조성 및 여성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3. 여성통일운동을 통한 남남여성협력 체제 강화
4. 통일 후 가치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5. 통일과정 정책에 여성참여 보장

결론적으로 남북한 반세기가 넘었지만 남북한 여성교류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왔고, 남북한 여성관련 용어비교에서도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남북한의 이질적 요소를 좁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일 후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나 지난 50년간 서로 다르게 변화되어온 남북한의 이념의 차이 극복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점차 좁혀나가는 노력이 없다면 통일의 역효과는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정책적 대안 없이 이룬 독일의 흡수 통일과정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급속하게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일의 통일 후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성문제를 지켜보면서, 우리 남북여성은 통일 이후 바람직한 여성정책 구현을 위해 통일 전의 언어·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일 후의 이질감 극복의 문제는 결코 통일 과정을 배제하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일의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듯,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은 분단 상태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 분단 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어 접근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의 교류에 물꼬가 트이고 점차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통일을 향한 사회 통합 과정에서 남북 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남북한 모두가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비정치적인 성향이 많으면서 삶의 기본 바탕인 생활의 주책임자라는 측면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여성의 사회 통합 과정 참여의 당위성은 크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어 등 이질화 극복방안 및 남북한 여성의 교류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언어 등 남북한 여성간 이질화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남북한의 50여 년간이나 쌓아온 이질감으로부터 동질감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남북한 여성 상호간의 커다란 질적 차이는 통일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남북한 양측의 인식과 사고 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변질되고 경직된 북한 여성, 지나치게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된 남한의 여성, 이 양자가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예로 남북한 여성들이 함께 모여 육아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남북한의 전통적 한국 음식의 보존상태나 변화된 상태에 관한 공동 연구 개최 등도 동질성을 서서히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분단된 후 우리의 가정생활 양식, 고부간의 관계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도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 분단 이후 오랫동안의 교류 단절로 인하여 언어의 이질화가 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분단으로 인한 반세기에 걸친 남북 간의 교류 두절로 인해 양쪽의 언어가 서로 아무 교섭 없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갔을 가능성⁶¹⁾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후 우리말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고 언어의 민족성을 함양하는 것의 초석이 될 것이다.

언어 이질화의 극복 방안으로 첫 번째, 언어 정책의 통일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공동 언어 정책 심의 기구를 상설화하여 남북한 언어학자들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송 매체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어의 이질감을 해소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남북한 주민이고 이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이질감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여성관련 언어와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과학원과 정기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임과 교류를 통하여 발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통일 과정상에 언어 이질화 극복을 위해선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가 요구되고 특히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성정책연구원과 학계, 여성단체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재정과 대화창구의 마련을 위하여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61)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국립국어연구원 제1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7쪽 참조

2. 북한 여성에 대한 협력기금 조성 및 여성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2007년 현재 계획된 전체 남북협력기금은 1조 6천 9백 4억원이다. 이중 남북협력사업기금은 약 8천 7백 4억원 규모이다. 현재 남북협력사업기금은 경제사업기반 조성사업, 인도적 지원기금 등 여러분야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측과의 합의가 있었을 때 지원이 된다. 남북한 여성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협력사업기금 중 일부를 여성협력기금으로 조성하여, 단기적으로 북한 여성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여성의 교류의 목적은 동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북한여성과의 접촉을 통하여 불 때 합의되는 여성정책의 의제를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통일 후 많은 여성들이 실업 뿐 아니라 주택난, 탁아소 문제, 빈부격차 문제, 사회보장문제 등의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협조체제내지 컨서시움을 구축하여, 시범적인 탁아소 운영사업 전개, 국수공장, 빵공장, 자전거공장 등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북한여성들이 자생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남북간 여성협력과 신뢰 구축 뿐 아니라, 남남협력을 구축할 수 있기도 하다.

3. 여성통일운동을 통한 남남여성협력 체제 강화

여성통일운동의 대중화를 통한 통일의 중요성과 남남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한국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가운데, 통일론에 대한 생각이나 접근방법에 있어 주도권싸움과 함께 갈등이 심하다. 이는 여성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문제에 있어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계에서 모범을 보여 슬기롭게 남남협력의 초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 방법을 남북한 여성사업을 구축하는데 있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 통일 후 가치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통일 후 실제 북한 주민과의 접촉시 발생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증진을 위해 여성 단체들 간의 워크숍과 남북한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⁶²⁾ 즉 북한의 여성 관련 영역에서의 정책과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 이후 여성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여성 정책과 남한의 여성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남북한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교육원에 남북한 여성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통일과정 정책에 여성참여 보장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상에 정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정책분야에의 정책결정 자로서의 여성의 참여를 통하여 통일정책에 성주류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동서독의 통일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작업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이 대표로 참석하여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이전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대표로 활동하였으나, 서독에 의해 흡수되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잃었던 역사적 사실이 반증해 주고 있다.⁶³⁾ 남북한 모두 정치는 남자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던 분위기 아래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적은데 이러한 현상부터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 과정상에 여성의 참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당이나 행정부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교류협력관련 법에 여성부문을 포함하여 제도적인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정부의 각 교류 협력 기구인 남북교류협력

62) 정무장관(제2)실(1991), 『남북한 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100쪽 이하 참조

63) 서울평양학회(2002), 『남북통일과 여성문제 그리고 여성정책』 주제발표, 여성부, 139쪽 이하 참조

추진협의회와 남북적십자회담, UN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 남북 상호 적절한 수의 여성인력을 참여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남북 교류 기구에 할당제를 도입해서라도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 이후의 여성정책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통일 제반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남북한 공동 여성정책에 대한 프레임을 짜는 것이야말로 이질감 극복을 위한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은 기필코 우리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만 되는 21세기 한민족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 북한주민도 같은 동포로서 사랑을 가지고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우선 상호신뢰 속에서 대화의 길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북한의 지나친 경제 낙후성 때문에 통로가 폐쇄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적 의미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문제는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폭적인 세계적 지원 아래 남북한 여성들이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이 연구가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북한사전>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편(1981), 「현대조선말사전」 2권, 북한: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림순응 외(1992), 「영조대사전」, 북한: 외국문도서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편(1995), 「조선대백과사전」 1~2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편(1996), 「조선대백과사전」 3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편(1997), 「조선대백과사전」 5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편(1998), 「조선대백과사전」 6~7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편(1999), 「조선대백과사전」 8~12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편(2000), 「조선대백과사전」 13~29권,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1997), 「민사법사전」, 북한: 사회안전부출판사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1~2권,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남한>

- 국가정보원 편(2000), 「북한 상용 특이 용어집 증보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1~3권, 두산동아
매일경제신문사 편(2005), 「경제신어사전 2005년판」, 매일경제신문사
여성부 편(2002), 「여성정책용어사전」, 여성부
이병태(2003), 「신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이종수(2000),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이택규 외(2004), 「큰글법률학사전」 전정판, 법률출판사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엔사이버(2007) (<http://www.encyber.com>)
한국브리태니커 온라인 최신용어사전(2007) (<http://www.britannica.co.kr>)

<단행본, 논문집>

- Andrew S. Natsios(2003), 「북한의 기아」, 다홀미디어
 국립국어연구원,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국립국어연구원 제1차 국제
 학술대회 논문집
 박현선(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
 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평양학회(2002), 『남북통일과 여성문제 그리고 여성정책』 주제발표, 여성부
 손봉숙 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손봉숙(1993), 「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 공보처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2001),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정무장관(제2)실(1991), 『남북한 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1970), 「경제사전」 1, 북한: 사회과
 학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2004), 「조선중앙연감」 제57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신사(2005), 「조선중앙연감」 제58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신사(2006), 「조선중앙연감」 제59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체제통합연구회 편(2006), 「남북한 비교론」, 명인문화사
 통계청(2007),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여성개발원(2005),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연구소(2005), 「개정판 새 여성학강의」, 동녘

<논문>

- 구수미·이미경(2005), “체제변화시기 북한도시여성의 지위변화: 중국 도시여성과의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2호
 김애실(1997),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이배용 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유경(2002), “우리나라 보건소의 생식보건사업 실시현황과 정책방안”
 김원홍(1997),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쟁점과 대책」, 한국정치학회주최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 림금숙(1999), “90년대 이후 조선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자(2004), “북한의 여성노동 정책(1953~1980년대): 노동계급화와 수평적·수직적 위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 성영혜·김수정(2001), “북한 보육제도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2호
- 양옥승·오미경(1995), “북한의 영유아 보육 정책”, 『한국영유아보육학』 제2집
- 이미경(2004),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조선여성』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제28권 제2호
- 이미경(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
- 이재희, 송희완(2003), “보건소 이용자들의 보건위생 행동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결정요인 및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 『소비문화연구』 제6권 제2호
- 임순희(2005),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
- 정현백(2001), “북한 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사회』 제12호
- 진수희(1997), “통일한국의 여성정책 연구”, 『바람직한 통일문화』, 민족통일연구원
- 최명숙(1999),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학술대회 자료집
- 최진이(2004), “여성 ‘기본 존엄’ 보장 안 되는 왜곡된 성문화 만연”, 『월간 말』 2004년 9월호

<인터넷 자료>

- “조명애가 누굽니까? 여자는 세차야지!”,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5. 9. 20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직업/성별 취업자”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북한정보>변화동향,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58주년 동향”, 2004.8.10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사전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1	가내노동	가내부업		家內勞動 ◇家內副業	집 안에서 하는 노동 형태. 생산 설비 따위를 제공받아 가공품이나 생산품을 납품한다.	봉건사회의 분해기와 자본주의사회에서 기본직업외에 가족로력으로 생계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주로 소비품을 생산하는 부업. 도시에서의 가내부업은 주로 바느질, 뜨개질, 다리미질, 빨래 등이다. 농촌에서의 가내부업은 봉건사회말기 상품생산이 발전하면서 많이 나타났다. 자본주의하에서도 가내부업은 존재하며 특히 식민지 사회나 농촌에서 자본주의발전이 뒤떨어진 곳에서 가내부업이 넓은 범위에서 존재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가내작업반은 착취사회에서의 가내부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것은 한사람도 높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수준을 훨씬 더 높이도록 하며 특히 가정부인들의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며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조직된다.	경제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과사전 1권(1995)
2	가사노동의 사회화	여성들을 부 업과 가정 일 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 한 기술혁명		家事勞動- 社會化◇ 女性 --- --- 家庭 -- 負擔-- 解放-- 爲 - 技術革命	가정에서 주부들이 수행하는 요리, 세탁, 청소, 자녀 보육, 병자 간호 등의 가사노동을 사회적 기능에 맡 기는 것. 가정용 전자제품과 기성복, 가공식품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의식산업이 변창하면서 가사노동 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가사노동 서비스를 노 동의 제공자별로 살펴보면, 첫째, 사기업에 의한 서 비스, 둘째, 목적을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한 상호 보 조적인 서비스, 셋째, 자치단체에 의한 공공 서비스 로 나누어진다. 보육을 예로 들면, 첫째, 베이비시터 (개별 가정방문 보육 서비스), 둘째, 어린이집·놀이방 등 국·공립 및 직장·민간·가정 보육시설, 셋째, 아이 들이 있는 부모들간의 공동보육 등을 들 수 있다.	로동생활에서 여성들에게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주며 여성들의 생 활을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만드는 기술혁명. 여성들을 부업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은 3대기술혁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고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식료가공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다. 또한 중요한것은 여러가지 현대적인 부업 세간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주는것이다. 끝으로 중요한것은 세탁소, 옷수리소, 양복점 등 편의봉사시설들을 널리 조직하고 사회적봉사를 개선하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사업을 더욱 잘 하는것이다.			한국브리태니커 온라인 최신용어 사전(2007)◇조선 대백과사전 5권 (1997)
3	가사실습	녀학생 실습교육				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주는 학과목 교육. 우리 나라 고등학교의 모든 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녀학 생들에게 피복, 수예, 식료, 보육, 간호와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능을 줄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녀학생실습과목교육에서 중요한것은 녀학 생들에게 피복, 수예, 식료, 간호, 보육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알맞은 부문의 사회적으로동에 능률적 으로 참가할수 있게 준비시키며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나라와 가 정의 알뜰한 살림꾼으로 키우는것이다.			◇조선대백과사 전 5권(1997)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4	가산	가정재산	가재 (家財)	家産◇家 庭財産	한 집안의 재산.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이루어 놓은 재산. 한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로동에 의한 분배나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과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다. 공민이 가정 성원 으로 되기전부터 가지고있던 재산(례를 들면 결혼전부터 가지고있던 재산)과 개인적용도에만 쓰이는 재산(연주가가 가지고있는 약기)은 가정재산이 아니라 가정성원의 개별재산이다. 언제나 몫에 의하여 갈 라지는 공동소유와는 달리 가정재산은 보통때는 몫에 의해 갈라지지 않고 부부가 리혼하거나 그밖의 가정성원이 가정에서 나갈 때 몫으로 갈라진다. 남한의 경우 부동산과 동산 등 가정재산의 규모가 크지만 북한은 겨우 살림살이 규모에 불과한 점이 차이난다.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1권(1995)
5	가정교육	자녀교양		家庭教育 ◇子女教 養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 도록 자녀들의 인격형성과 지식 획득 등을 도와주거 나 가르치는 인간형성작용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양. 자녀교양은 어릴 때부터 후대들에게 올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 동시에 그들을 참된 공산주의적인 간으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녀교양의 첫째가는 담당자는 어머 니이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 어머니가 준 인상은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으며 성격과 습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	두산세계대백과 사전(1996) 엔싸 이버(2007)◇조선 대백과사전 16권 (2000)
6	가정상비약	가정약		家庭常備 藥◇家庭 藥	가정에서 응급 처치나 간단한 치료를 위하여 항상 갖추어 두는 약.	가정에서 흔히 생길수 있는 소소한 병 또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갖추어두는 약.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1권(1995)
7	가족간호 휴가제	간호진단		家族看護 休暇制	가족이 아플 때 여성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최장 1 년간 휴가를 주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제도. 미국, 일본 등은 여성의 지속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이미 이 제도를 권장사항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 은 1995년부터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이 휴직제도를 이용한 국가 공무원은 1998년까지 21명(남자 7명, 여자 14명)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한 기업 은 1999년 현재 5.6% 정도이나 아직 법으로 규정하 지 않고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경우 진단을 제출하여 휴가를 낸다.		#	두산세계대백과 사전(1996) 엔싸 이버(2007)◇자문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8	가족법	가족법		家族法 ◇ 家族法	종족유지를 위한 친족적 공동생활 형태, 신분의 승계(承繼), 신분에 기인하는 재산의 승계를 규율하는 실체법(實體法)의 전체계.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가족, 친척들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 법. 결혼, 가정, 후견, 상속관계 등에 대한 규정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1990년 10월 24일에 채택되었으며 6개장 54개조로 되어있다. 공화국가족법의 사명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 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적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가족성원들간의 관계에서 선차적이며 기본적인것은 인격적측면이며 재산적측면은 극히 부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의 가족법은 가장권이 절대시되는 호주중심의 가족관계를 규정하여 남존녀비의 봉건적유습을 공인, 장려하며 가족관계에서 인격적측면보다 재산적측면을 중요시하고있다.	법률 ◇ 법률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1권(1995)
9	가족주의	가족주의	가족이 기주의	家族主義 ◇ 家族主義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개개의 가족성원보다 중시하고, 가족적 인간관계를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에까지 의제적(擬制的)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주의.	무원칙한 정실, 안면 관계를 맺고 서로 싸고돌면서 혁명의 리익보다 자기들의 리익을 앞에 세우는 비조직적인 사상경향과 행동. 가족주의의 사상적근원은 개인리기주의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가족주의의 사회계급적근원이 없다. 그러나 낡은 사상 잔재인 개인리기주의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므로 가족주의가 생겨날 수 있다. 가족주의는 가족관계, 친척관계, 동향관계, 친교관계, 사제관계 등에 기초하여 개인의 명예와 공명, 직위욕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비렬한 정치적야욕을 품고있는자들가운데서 형성조장될수 있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1권(1995)
10	간통	부화	◇간통	姦通 ◇ 浮華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① 실속이 없이 들뜨고 걸치레만 화려한것		#	표준국어대사전(1999)◇조선말대사전 1 (1992)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11	강간과 추행의 죄	성적범죄		強姦—醜行—罪◇性的犯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거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말한다.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등 상해·치상죄(301조), 강간등 살인·치사죄(301조의 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를 가리킨다.	녀성의 정조를 강제적방법으로 유린하는 범죄. 강간죄와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간음죄로 나뉜다. 강간죄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것과 같은 강제적방법으로 그와 성교한 경우, 피해자가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그의 동의없이 성교한 경우, 15살에 이르지 못한 여성과 성교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강간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르간하였을 때에는 보다 엄중한 강간죄로 된다.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간음죄는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강요하여 그와 성교하였을 경우에 성립된다. 성적범죄는 주관적으로 과실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고의에 의해서만 범해질수 있다.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은 <형법>에 형식상 <정조에 관한 죄>를 설정하고있으나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성적범죄를 조장시키고 있다.	법률◇법률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14권(2000)
12	건강보험	의료보험		國民健康保險◇醫療保險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2000년 7월에 각종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었다.	일정한 자금을 형성하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 받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의료보험은 가입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운영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특별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예산에서 사회문화시책비의 일부분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경제	#	경제신문사전 2005년판(2004)◇조선대백과사전 29권(2001)
13	계모	후어머니	의붓어머니	繼母◇後---	의붓어머니	전처의 아들이 <아버지의 후처>를 이르는 말		#	표준국어대사전(1999)◇현대조선말사전(1981)
14	고아원	애육원	육아원(育兒院)	孤兒院◇愛育院	고아를 거두어 기르는 사회사업 기관.	보호자가 없는 유치원 나이의 어린이들을 맡아서 키우고 교양하는 양육기관.		#	표준국어대사전(1999)◇북한상용특이용어집(2000)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15	근친상간	근친교배		近親相姦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음.			#	표준국어대사전 (1999)
16	근친혼	근친혼	근친 결혼	近親婚◇ 近親婚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혼인을 말한다. 우리 민법도 처음에는 근친혼의 혼인금지범위를 (1) 동성동본의 혈족간 (2)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7년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허용되었다.	가까운 친척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 근친혼은 결혼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고 일정한 촌수안의 혈족이나 인척(배우자측 친척) 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 하는 결혼이다. 근친혼은 사회주의나라나 자본주의나라나 할것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다. 우리 나라 가족법에서는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수 없다.>(10조)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률	\$\$	신법률용어사전 (2003)◇민사법사전(1997)
17	노동	로동		勞動◇ 勞動	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활동. 사람들은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지출한다. 바로 이러한 창조적힘의 지출과정이 곧 로동이다. 로동은 사회생활과 그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동은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자료, 온갖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며 사회생활의 영원한 조건이다. 사회생산력도 로동을 통하여 발전한다.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과사전 7권(1998)
18	노동법	로동법		勞動法◇ 勞動法	노동법은 규율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개별법규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최저기준을 정하여 국가권력으로 그 시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등을 들 수 있다.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로동관계를 규제한 법. 국가법체계의 한 고리로서 사회로동제도를 반영하며 직접적으로는 국가의 로동정책을 표현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로동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시어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 발표하신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사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19	노령연금	년로연금		老齡年金 ◇年老年金	일정한 연령에 달한 노령자에 대한 권리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연금·후생연금·농업자 노령연금 등 여러 종류가 효율성 있게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1986. 12. 31. 법률 3902호)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국민연금법 56조 1항).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일할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주는 사회보장연금. 우리 나라에서 년로년금은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로동자, 사무원, 군인들이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받는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5권(1997)
20	도덕교육	버릇교양		道德教育 ◇一教養	도덕성, 즉 도덕적인 성격 또는 생활태도를 육성하여 사회의 관습적 규칙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사람들에게 생활과 행동 관습을 키워주기 위한 교양. 버릇교양을 잘하는것은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학습도 잘하고 공산주의도덕도 잘 지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대로 일하고 생활하는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교육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10권(1999)
21	동성동본금혼	동성불혼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禁婚 ◇同姓不婚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과 제도. 종래 민법은 동성동본금혼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은 남성의 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조항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결국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로 인한 민법 개정에서, 동 조항은 근친혼 금지로 개정되었다.	성이 같은 사람들사이에 혼인하지 않는 풍습.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의 혼인은 <근친상간>의 금기대상으로 된다. 그 리유는 주로 자식들에게 나쁜 유전적영향을 준다는 것과 도덕적측면에서 고찰되고있다. 그러나 금기현상은 유전학이 발전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여왔다. 이는 아름다운 도덕관념에 기초한 과학적이며 발전된 혼인풍습으로서 건장한 후대와 건전한 도덕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할 풍습이다.	법률	#	여성정책용어사전(2002)◇조선대백과사전 6권(1998)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22	동성애	동성애	동성연애◇동성련애, 동성결혼	同性愛◇同性愛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대개 여성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된다. 과거에는 동성연애 또는 성대상 이상(性對象異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동성애 혐오적인 의미가 있다하여 인권 활동가들은 동성애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성애자를 일반적이라고 보는 사회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역설적으로 이반(二般 또는 異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넓은 생활양식에서,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변태적인 사랑. 이러한 사이에서 하는 기형적인 변태적 연애를 동성련애, 결혼을 동성결혼이라 한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말대사전 1(1992)
23	모성	모성		母性◇母性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육체적 성질. 또는 그런 본능.	어머니, 아이어머니, 애기어머니.		\$\$	표준국어대사전(1999)◇조선말대사전 1(1992)
24	모성보호	여성노동에 대한 특별보호		母性保護◇女性勞動---特別保護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 한국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의 특별보호를 위하여 ① 위험유해 업무의 취업금지(51조), ② 야간작업·휴일근로의 금지(56조), ③ 시간의 근무의 제한(57조), ④ 갱내(坑內) 근로의 금지(58조), ⑤ 유급생리휴가(59조), ⑥ 산전·산후 휴가와 임신중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60조), ⑦ 유급 수유시간(61조), ⑧ 귀향여비(62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11조)와 육아시설 설치(12조)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여성들의 건강 및 노동 보호를 위하여 취해지는 국가의 특별한 법적조치.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법규에 의하여 여성노동자들을 진동이 심한 작업, 맹한작업, 견인작업과 무거운 짐을 다루는 작업, 잠수함 및 잠함 작업부문에 일시시킬수 없다. 첫머리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근로여성들에 대해서는 야간로동이 금지되고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곳에는 근로여성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 여성상당실,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등을 설치함으로써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적진출을 적극 보장하고있다.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3명이상 가지고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하루에 6시간 로동을 하게 하고 로동시간이 줄어들데 관계없이 8시간에 맞먹는 생활비를 준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5권(1997)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25	무보수 노동	무보수 로동		無報酬勞動◇無報酬勞動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형태로든 보수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 대표적인 예를 가사노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족이외의 영역에서는 대체로 자영업이나 가내공장 등에 종사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이 이에 속함.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로동.		\$\$	여성정책용어사전 (2002)◇조선말대사전 1(1992)
26	미혼모	해방처녀		未婚母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			#	표준국어대사전 (1999)◇
27	민법	민법		民法◇民法	①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재산상 독자성에 기초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 부문법. 민법이 규제하는 재산관계는 일정한 재산에 대한 점유, 이용, 처분과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별적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사회관계이다.	법률◇법률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과사전 10권(1999)
28	민사사건	민사사건		民事事件◇民事事件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	재판소가 민사소송절차로 심리, 해결하는 사건. 민사사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 개별적공민들사이 그리고 법인과 공민들사이에서 서로 같은 지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재산적관계에서 발생한 민법상의 분쟁사건이 속한다. 민사사건에는 또한 공민들의 리혼, 자녀양육, 부양료청구와 관련한 가족법상의 분쟁사건들이 포함된다.	법률◇법률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과사전 10권(1999)
29	보건위생	보건위생		保健衛生◇保健衛生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로 넓은 의미로는 사회 환경을 좋게 하는 일로 정의될 수 있음. 세부적인 종류로는 개인 위생, 공중위생, 식품위생, 정신위생, 환경위생등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음.	보건사업과 위생사업을 포괄한 개념. 일반적으로 보건사업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대책의 전반내용을 담고있는 개념으로서 위생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위생사업을 좀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건위생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	이재희, 송희완, "보건소 이용자들의 보건위생 행동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결정요인 및 약분업에 대한 인식" (2003)◇조선대백과사전 11권(1999)
30	보육	보육		保育◇保育	어린이들을 돌보아 기르.	탁아소에서 어린이들을 길러내는 사업. 보육사업의 기본은 위생관리, 영양관리, 건강관리를 잘하며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이다.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과사전 11권(1999)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31	보육교사	보육원		保育教師 ◇保育員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어린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양육자. 우리 나라에서 보육원은 보육교양기관들에서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 키우는 첫 사회적양육자이며 교육자이다. 보육원은 보육원양성소를 통하여 양성되며 탁아소, 육아원들에서 어린이관리책임제에 따라 유치원, 애육원에 가기전까지 어린이들을 고정담당한다. 또한 보육원들은 어린이들의 나이별 지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여 우리 말과 글, 노래, 레절 등 정서지능교양을 한다.		#	영유아보육법 (2005)◇조선대백과사전 11권 (1999)
32	봉사	봉사		奉仕◇奉仕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공급, 편의봉사, 도시경영, 관광객수,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체신, 보건, 문화, 후생 등 부문의 활동. 봉사노동은 본질상 비생산적노동이며 사회생산물과 국민소득의 창조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다. 주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한다.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과사전 11권 (1999)
33	부부의 부양의무	부부의 부양의무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2007.5.17 개정 법률 제8435호 민법 826조, 974조, 975조)	남편과 안해사이에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서로 부양할데 대한 의무. 법적으로 규제한다. 한편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편 배우자는 그를 부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부부의 부양의무는 결혼생활기간에만 지게 되는 의무이다.	법률◇법률		민법(2007)◇조선대백과사전 11권 (1999)
34	부부의 인격관계	부부의 인격관계				남편과 안해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격적 권리의무관계. 우리 공화국가 족법은 남편과 안해에게 인격과 관련하여 완전히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다. 남편과 안해는 무엇보다먼저 결혼전의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진다. 다음으로 희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다. 남편과 안해는 또한 가정생활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족법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같이 친권을 부여하고있으며 가정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남편과 안해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끝으로 남편과 안해는 가정생활과정에 어느 한편이 행위무능력자로 되었을 경우에 상대편 배우자의 후견인으로 될 권리를 가진다.			◇조선대백과사전 11권(1999)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35	부부재산제	부부의 재산 관계		夫婦財産制<夫婦-財産關	혼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부부재산제로서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의 두 종류가 인정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이란 부부가 그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 한국의 법정재산제는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과 혼인생활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인정하여, 각각 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그 밖에 혼인생활 중 일상적인 가사(家事)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책임을 지며, 또한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에게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인정된다. 또한 혼인생활의 비용, 즉 생활비·자녀교육비·의료비·장례비 등 비용의 부담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에 대한 남편과 안해사이의 권리의무관계. 우리 공화국가족법은 남편과 안해가 재산에 대하여 완전히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규제하였다. 남편과 안해는 무엇보다 먼저 소유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남편과 안해는 결혼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진다. 그리고 결혼생활과정에 남편과 안해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같이 가진다. 남편과 안해는 결혼생활과정에 한편 당사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개별재산)과 채권채무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상대편 배우자가 진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진다. 남편과 안해는 다음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똑같이 지닌다. 다음으로 상속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한편 배우자는 다른편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똑같이 가진다. 배우자는 1순위의 상속인이다.	법률< 법률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민사법사전(1997)
36	사랑	사랑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	일정한 대상을 귀중히 여기고 위하는 사상감정. 일정한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심리정서적인 현상으로서 객관적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그 원천을 둔다. 참다운 사랑은 사람들을 단순히 육체적생명과 육체적생명의 결합, 감정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회정치적생명과 사회정치적생명의 결합, 공동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 영원한 혁명동지로 결합되게 한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12권(1999)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37	사실혼	사실혼		事實婚 ◇ 事實婚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된다.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보호를 전혀 도의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종래 관례나 입법 등에 의해서 약간의 보호를 받아 왔다. 유족의 범위적용에 있어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부양자'로 취급된다.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상 동성혼(同性婚)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실상 중혼(重婚)이 되는 사실혼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발생이나, 입적문제, 호주승계문제 및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남녀가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하는 행위. 법률혼에 대치되는 용어이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녀가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에 리혼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그들의 공동생활과정에 공동동력으로 번 재산에 대해서는 가족법상의 규범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공동소유분할준칙이 적용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혼을 일정한 조건 밑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하였다. 첫째로, 우리 공화국에서 결혼등록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맺은 결혼관계(해방전의 모든 결혼)에 대하여 법률혼으로 인정하였다. 둘째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결혼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실혼생활을 하던중 배우자가 인민군대, 빨치산 또는 정치공작대에 나가 활동하다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법률혼의 부부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인정하였다. 셋째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여자와 사실혼생활을 하던 남자가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가 제대되면서 다른 여자와 정식 결혼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첫 여자와의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인정하여주었다. 이것은 전쟁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법률 ◇ 법률	법률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사이버(2007) ◇ 민사법사전(1997)
38	사회 보장제	사회 보장제		社會保障制 ◇ 社會保障制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장 제도. 사회 보험, 생활 보호, 공중위생 따위의 분야에 걸쳐 국가가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적 부담으로 보장하여주는 제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보장제는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알맞은 일자리의 보장, 사회적원호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있다.	사회	\$\$	표준국어대사전(1999) ◇ 조선대백과사전 13권(2000)
39	사회생활	사회생활		社會生活 ◇ 社會生活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생활.	사람이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회적관계를 맺고 진행하는 활동.	사회	\$\$	표준국어대사전(1999) ◇ 조선대백과사전 13권(2000)
40	산아제한	산아제한		産兒制限 ◇ 産兒制限	사회적 인구 문제의 해결, 우생학적 사회 개량 따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피임 방법을 통해 수태와 출산을 제한하는 일.	아이낳이를 인공적으로 제한하는 일.	사회	\$\$	표준국어대사전(1999) ◇ 조선말대사전 1(1992)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41	산전산후 휴가	산전산후 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	産前産後休暇◇産前産後休暇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지는 휴가.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주어진다. 법적으로는 '산전후휴가'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종전 6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지만 2001년 11월 1일부터는 90일로 연장되었다.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최초 60일의 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받을 수 있고 액수도 제한되어 있다.	여성들이 임신, 해산하였을 때 받는 휴가. 우리의 모든 여성근로자들은 임신하였거나 해산하였을 경우에 정기휴가와 보충휴가외에 일요일을 포함하여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산전산후휴가는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받는다. 산전산후휴가기간 여성근로자들은 보조금외에 식량을 공급받으며 안정된 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법률	\$\$	여성정책용어사전 (2002)◇조선대백과사전 13권 (2000)
42	산전후 휴가급여	산전산후 보조금		産前後休暇給與◇産前後補助金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산전산후휴가를 받는 여성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지불하는 일시적 보조금.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산전산후보조금은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방조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 여성근로자들은 해산을 전후로 하여 정기 및 보충 휴가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받으며 이 기간에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월기본생활비에 맞먹는 산전산후보조금(여성협동농장원은 평균로력일)을 받는다. 산전산후보조금의 지불기간은 산전에 60일, 산후에 90일이다. 이 기간에 월기본생활비의 100프로에 해당하는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한다. 산전산후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지출로 보장하며 그 자금원천은 대부분이 국가예산금이다.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2005)◇조선대백과사전 13권 (2000)
43	산파	조산원		産婆◇助産員	①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여자.	① 아이밴 여자들을 보살피고 몸풀 때와 그 뒤일을 돌보는 의료일군.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말대사전 2 (1992)
44	생식보건	여성위생	여성 건강	生殖保健◇女性衛生	생식체계(reproductive system)와 그 기능 및 과정에서 질병이나 쇠약함이 없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지상태. 단순히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가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를 의미.	여성들이 지켜야 할 위생. 여성들의 달거리, 임신, 몸풀이, 폐경 등과 같은 생리적특성에 따라 특별하게 생길수 있는 병들을 예방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위생이다.		#	김유경, "우리나라 보건소의 생식보건사업 실시현황과 정책방안" (2002)◇조선말대사전 1 (1992)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45	생활양식	생활양식		生活樣式 ◇生活樣式	사회나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생활하는 방식.	생활양식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 행동준칙의 총체이다. 생활양식은 민족적 전통의 힘을 가지고 계승되며 유지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생활양식에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반영된다.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15권(2000)
46	생활 필수품	생활 필수품	생필품, 생활품	生活必需品 ◇生活必需品	일상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의 한 부분. 이불장, 양복장과 같은 가정용품, 가시장, 밥가마와 같은 부엌세간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사는데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품들이 포함된다.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15권(2000)
47	성희롱	녀성희롱		性戲弄 ◇女性戲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국가인권위원회 법(2006)
48	세계 여성의날	국제 부녀절		世界女姓 —◇國際 婦女節	세계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날.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이 제창하여 3월 8일로 정하였다. 세계여성의 날을 이날로 정한 것은, 1857년과 1908년의 3월 8일에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근로여성의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1857년 뉴욕시의 섬유·의류 공장 여직공들이 작업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여, 진압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고, 1908년에는 수천 명의 미국 봉제산업 여종업원이 미성년자 노동금지과 여성참정권까지 포함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시위를 벌였다.	전세계 근로여성들의 국제절 명절. 3·8절이라고도 한다. 1910년 단마르크의 수도 쾰른하른에서 17개 나라 여성대표 약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대회에서는 1909년 독점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남녀평등권과 자유를 요구하여 파업과 시위를 벌인 미국 시카고의 여성노동자들에게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고 그들이 투쟁에 일떠선 날인 3월 8일을 매해 전세계 근로여성들의 전투적명절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	두산세계대백과 사전(1996) 엔싸 이버(2007)◇조선 대백과사전 3권 (1996)
49	소년범죄	미성인범죄		少年犯罪 ◇未成人 犯罪	20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 소년법에서 다룬다.	성인나이에 이르지 못한자가 범한 죄. 소년범죄라고도 한다. 미성인범죄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범죄가 아니라 미성인이 범한 죄를 통틀어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4살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자가 죄로 되는 행위를 감행하였을 때 미성인범죄자로 된다.	법률 ◇ 법률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9권(1999)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50	소유권절대 의 원칙	소유권의 법 적보호		所有權絶 對-原則 ◇所有權 의 法的保 護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 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 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인데, 사유 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이기에 때 문에 이 원칙을 또한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계약자유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기본적 원칙 을 이루고 있다.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그 실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법적제 도. 국가는 주권을 장악한 계급에게 유리유용한 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 정공포하며 그 준수집행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 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유권보호 제도는 계급적성격을 띤다. 사회주의국가는 전체 인민의 공동의 권리 인 국가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협동단체소유권과 근로자들 의 개인소유권을 다같이 법적으로 보호한다.	법률◇ 법률	#	큰글법률학사전 (2004)◇조선대백 과사전 14권(2000)
51	아내	안해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	아내.		#	표준국어대사전 (1999)◇북한상용 특이용어집(2000)
52	양로원	양로원		養老院◇ 養老院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을 수용하여 돌보는 사회 보호 시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보장기관. 로 동능력을 잃어 자립적으로 생활할수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27권(2001)
53	양막	모래집막	모래집	羊 膜 ◇ ---膜	포유류의 태아를 둘러싼 반투명의 얇은 막. 속에는 양수가 들어 있다.	태아를 싸는 얇은 막.	의학◇ 의학	#	표준국어대사전 (1999)◇북한상용 특이용어집(2000)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54	양육비	자녀 양육비		養育費◇ 子女養育 費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자녀양육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 우리 나라에서 자녀양육비는 리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안해 가운데서 어느 한편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지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지불한다. 자녀양육비지불기간은 자녀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비청구권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청구소송 이전시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시기의 양육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양육비는 자녀의 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프로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양육비를 지불받던 자녀가운데서 일부가 로동할 나이에 이른 경우 양육비의 규모를 다시 정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 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줄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1999)◇민사법사전(1997)
55	여권주의	여성 옹호사상		女權主義	여자에게 사회적·정치적·법률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자는 사상.		사회	##	표준국어대사전 (1999)
56	여성노동	여성로동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여성들의 활동. 여성로동에 관한 문제는 사적소유와 계급의 발생과 함께 여성들이 생산로동에서 떨어져나와 가정에 파묻히게 되면서 제기되었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착취사회에서 특히 봉건사회에서 생산로동, 사회활동은 남자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으로 되었으며 여성들은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잡다한 가사에 종사할뿐이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여성로동문제는 단순히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참여시켜 긴장한 로력사정을 풀기 위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다.			◇조선대백과사전 5권(1997)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57	여성노동력	여성로력	◇로동 여성, 여성로 동자			성별로력분류에서 남성로력과 구별되는 노동능력있는 여성의 총칭. 여성로력에 대한 문제는 로력구성에서 차지하는 여성로력의 지위와 배치 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여성로력은 사회적으로로력구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노동력의 중요원천으로 된다. 여성로력을 사회주의 건설에 광범히 인입하는것은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여성들의 사회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여성로력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인입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서는 사회경제적시책들이 세워진다. 노동생활에 참가하는 여자를 로동여성이라 한다.			◇조선대백과사전 5권(1997)
58	여성문제	여성문제		女性問題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가치·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사회적문제. 여성문제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여성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측에서 해방하는것이다. 다음으로는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사회정치적권리를 주고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 하는것이다. 여성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측과 인신적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사회정치적권리를 주는 문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해결된다. 다음으로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육체노동들사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해결된다. 여성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통하여 해결되어나간다. 여성문제는 노동계급의 혁명임무의 중요구성부분이지만 그 해결의 주인은 여성들이다.	사회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사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5권(1997)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59	여성발전기본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女性發展基本法/男女差別禁止-救濟-關-法律<北朝鮮男女平等權-對-法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고 2005년 개정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29일 폐지되었다. 총 5장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총칙, 성차별의 금지, 전담기관, 조사의 절차, 보7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3~7조에서는 남녀차별의 금지분야 및 차별 시정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즉 고용분야를 포함한 교육에서의 차별,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에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여 차별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또 차별 시정 대상 기관을 민간기업체 위주에서 국가기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였다. 남녀차별 사항의 조사·시정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담기관이 되어 수행하였다. 남녀차별 개선 사무를 위해 두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① 남녀차별사항 조사와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② 남녀차별적 법령·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③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기준 및 개선 지침의 수립 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7월 30일에 발표하신 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은 서문과 9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서문에서는 이 법령이 일제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관계를 개혁하며 여성들을 문화, 사회정치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가시킬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나라가 해방되고 북조선에서의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들이 실시되고있는것은 여성들을 지난날 불평등한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 생활로부터 해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 것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여성들이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는것,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 동일한 로임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 가정생활령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것, 여성들도 자유결혼, 자유리혼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는것과 결혼나이를 여성은 17살, 남성은 18살 이상으로 한다는 것, 일부다처제와 여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는것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률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사이버(2007)<민사법사전(1997)
60	여성운동	녀성운동		女性運動	여성의 권리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운동.	<여성들이 벌리는 사회정치운동>을 통털어 이르는 말.	사회< 사회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사이버(2007)<조선말대사전 1(1992)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61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없앨데 대한 협약		女性差別 撤廢協約 ◇女性 ----差別- 對-協約	1979년의 제34차 UN 총회가 채택한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 또는 그것을 목적인 법과 관습들을 없앨데 대한 국제조약. 1979년 유엔 총회 제34차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사회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5권(1997)
62	여성해방	여성해방		女性解放	사회 활동을 하는 데에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받고 있는 제도적·의식적 속박을 해제하는 일. 근대적 개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확산되었다.	사회적 무권리와 불평등에서의 여성들의 해방. 여성해방에 관한 문제는 착취사회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온갖 형태의 압박과 구속에서 여성들을 해방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여성해방은 그들이 온갖 무권리와 불평등에서 벗어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적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사회혁명이다. 여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며 그들이 남자들과 똑 같은 사회적지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면 여성들을 구속하는 사회계급적 및 경제적 근원은 청산되고 그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여성들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여성해방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려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여성들이 힘든 일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사회	\$\$	표준국어대사전(1999)◇조선대백과사전 5권(1997)
63	여성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		女性解放運動	남녀의 성별(性別)에서 오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려는 운동.	여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벌려나가는 사회정치운동.	사회◇사회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말대사전 1(1992)
64	연애결혼	맞혼인		戀愛結婚 ◇-婚姻	연애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진 결혼	중매없이 당사끼리 하는 혼인		##	표준국어대사전(1999)◇현대조선말사전(1981)

78 2007년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 연구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65	영아 사망률	갓난아기 사망률			1세 미만 영아의 연간 사망아수를 당해년 출생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값.			#	여성 통계 연보 (2005)
66	요양소	료양소	요양원	療養所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건 기관.	료양할 사람을 받아 치료하는 치료예방시설. 자연치료 조건에 따라 광천료양소, 감탕료양소, 기후료양소 등이 있으며 질병에 따라 여러가지 료양소들이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말대사전 1(1992)
67	월경	달거리	경도(經度), 계수(經水), 달거리, 달수(一水), 멘스, 멘스트루에이션, 생리(生理), 월객(月客), 월사(月事), 월후(月候), 환경(環經), 홍조(紅潮)	月經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출혈하는 생리 현상. 임신하지 않는 경우 황체(黃體)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內膜)이 벗겨져서 일어난다. 보통 12~17세에 시작하여 50세 전후까지 계속되는데 임신 중이나 수유기를 빼놓고는 평균 28일의 간격을 두고 3~7일간 지속된다.	다 자란 여성의 자궁에서 매달 한번씩 4~5일간 피가 나오는 현상. 45~50살 정도까지 약 30년동안 매달 일어나며 임신하였거나 아이에게 젖먹이는 기간은 일어나지 않는다.	의학◇생리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말대사전 1(1992)
68	유방암	젖암	유선암, 유암(乳癌)	乳房癌◇-癌	유방에 생기는 암. 초기에는 통증이 없이 잘 움직이는 멍울이 만져지다가, 차츰 이 멍울이 피부에 유착하면서 외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욱 진행하면 궤양과 통증이 따른다.	젖선에 생긴 암.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은 암종의 하나로서 40~60살 안팎에 많으며 때로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드물게 남자에게서도 관찰된다.	의학◇의학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과사전 17권(2000)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69	유족연금	유가족연금		遺族年金 ◇遺家族 年金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한국의 현행제도에서의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족의 범위에서 각 제도의 공통점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부모·손(孫)·조부모 등 사망자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시까지 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을 같이 했던 자라는 2가지 요건이다.	혁명투사, 군인, 노동자, 사무원, 농민들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부양을 받아오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연금. 유가족년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부양가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5권(1997)
70	의료법	보건법		醫療法◇ 保健法	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및 보건기관들의 활동을 규제한 법. 사람의 건강보호증진과 관련한 사회관계의 총체를 규제한다.	법률◇ 법률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11권(1999)
71	의무교육	의무교육		義務教育 ◇義務教 育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의무를 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2001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부터는 시·광역시·특별시에까지 확대되어 2004년 전국민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	법적으로 보장 받는 교육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하여 배울수 있게 하는 교육제도.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는 교육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확고하게 안착된것으로서 근로인민대중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본질적징표를 이룬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대백과사전 29권(2001)
72	이데올로기	리념	이념, 사상	◇理念	인간·자연·사회에 대해 품는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의 제형태.	진리나 이상적인것에 대한 지향.	철학◇ 철학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말대사전 1(1992)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73	이혼	리혼		離婚	혼인신고로 발생된 혼인 계약의 파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두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문서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이혼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협의해 의해 정하며, 협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이혼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있으며, 이혼 책임 여부와 상관 없이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남녀사이의 부부관계를 단절하는 행위. 리혼은 결혼에 의하여 부부로 되었던 남녀사이에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지게 되던 가정적권리의무관계를 없애버린다. 결혼과 가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우리 나라에서 리혼은 법에 의해 통제되며 재판절차로만 할 수 있다. 리혼재판청구는 부부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만이 할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 임신중이거나 1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를 가진 녀성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리혼사건은 기각한다.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의 범위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리혼은 재판소의 리혼판결서등본을 신분등록기관에 제시하고 리혼등록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법률 법률	\$\$	여성정책용어사전(2002)◇조선대백과사전 8권(1999)
74	인간에	인간에		人間愛◇ 人間愛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에게에 대한 가장 옳은 관점과 태도를 표현하는 도덕품성이며 인간성을 보여 주는 료리도덕적개념이다. 그 본질적내용을 이루는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에 은혜를 베푸는것이다. 인간에의 중요내용을 이루는것은 우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존중하는것이며, 다음으로는 인간에 대한 은혜이다. 참다운 인간에는 인간일반에 대한 추상적이고 초계급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과 인연이 없다. 그것은 당성, 로동계급성과 결합된 인간에 대한 혁명적인 사랑이다. 참다운 인간에는 인간중오의 감정과 립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중오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참다운 인간에의 소유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 특히 공산주의자들이다. 인간에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동지애이다.		\$\$	표준국어대사전(1999)◇조선대백과사전 28권(2001)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75	임신	애기설이	성태 (成胎), 유신 (有身), 임신 (孕娠), 임중 (孕中), 임태 (孕胎) ◇아기 설이	妊娠	아이나 새끼를 뱌.	뱌속에서 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	표준국어대사전 (1999)◇북한상용 특이용어집(2000)
76	입덧	뒤입쓰리	임신구 토, 입 신오조 (妊娠 惡阻)		임신 초기에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는 증세.	임신오조. 전기 임신중독증	의학◇ 의학	#	표준국어대사전 (1999)◇북한상용 특이용어집(2000)
77	장모	가시 어머니	빙모 (聘母), 처모 (妻母)	丈母	아내의 어머니	안혜의 어머니		#	표준국어대사전 (1999)◇현대조선 말사전(1981)
78	재택근무	자택근무		在宅勤務 ◇自宅勤 務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사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	관리자동화가 발전하여 자료전송체계와 말단장치들이 완비될 때 업무일군이 출근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경영활동을 벌리는 근무방식.	사회◇ 사회	#	두산세계대백과 사전(1996) 엔싸 이버(2007)◇조선 말대사전 2(1992)
79	제왕절개	애기 집가르기	◇아기 집가르 기	帝王切開 手術	모체의 배를 가르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꺼내는 수술. 산도가 열리지 않고 출혈이 심하거나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하며, 복식 제왕절개 수술과 결식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	제왕절개수술.	의학◇ 의학	#	표준국어대사전 (1999)◇북한상용 특이용어집(2000)
80	주부	가두녀성	가정 주부	主婦◇街 頭女性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가정 살림만을 맡아 하는 주부.		#	표준국어대사전 (1999)◇표준국어 대사전(1999)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81	진통	산비룩	산통	陣痛	해산할 때에, 짧은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복부의 통증. 분만을 위하여 자궁이 불수의적(不隨意的)으로 수축함으로써 일어난다.	아이를 낳으려는 기미가 있어 진통하는 일.	의학	##	표준국어대사전 (1999)◇북한상용 특이용어집(2000)
82	집안일	가정일	가간사, 가 무 (家務) ◇집안 일, 집안 거두매	◇家庭-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일. 빨래, 밥하기, 청소 따위를 이른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해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일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말대 사전 1(1992),북한 상용특이용어집 (2000)
83	최저 임금제	최저 임금제		最低賃金 制◇最低 賃金制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금의 가장 낮은 한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는 사회제도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민민주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제도에 있어서 실시되는 최저임금제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자, 사무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경제◇ 경제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21권(2001)
84	친고죄	친고죄		親告罪◇ 親告罪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를 할수 있는 범죄. 우리나라의 주체39(1950)년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상해죄, 구타죄, 모욕죄, 출판물을 통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저작발명권침해죄, 부정경업죄가 친고죄였다. 친고죄제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관대히 용서하거나 강간당한 경우와 같이 수치스러운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묵인하는것을 전제로 설정된것이다. 범죄에 대해 형사소추를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는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하여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국가와 사회의 리익의 견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주체63년에 채택된 사회주의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현행형사법에서는 친고죄를 규정하지 않았다.	법률◇ 법률	\$\$	두산세계대백과 사전(1996) 엔싸 이버(2007)◇조선 대백과사전 21권 (2001)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85	친생자추정	아버지의 확정	인지, 친생자관계준부확인	親生子推定◇----確定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를 부의 자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또한 친생자관계준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친아버지를 확정하는 행위. 결혼중에 안해가 임신하여 해산한 경우에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 된다. 미혼중의 녀성이 임신하여 해산한 경우에 남자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면 아이의 아버지로 된다.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남자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절차로 아버지를 확정한다. 아버지의 확정을 위한 민사사건은 법의 감정결론서에 기초한 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법률◇ 법률	#	큰글법률학사전(2004), 민법(2007)◇민사법사전(1997)
86	탁아소	탁아소		託兒所◇ 託兒所	부모가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그 어린아이를 맡아서 보살피고 가르치는 사회 시설.	유치원에 가기전 시기의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 우리 나라에서 탁아소는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인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공산주의적방법으로 보육교양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노동의 질과 량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녀성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에서 무료로 보육교양한다. 탁아소는 녀성들의 편리를 더 잘 보장하여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살림집지구와 녀성들의 일터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탁아소의 규모는 지역별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근로자들의 수에 따라 여러가지이다.		\$\$	표준국어대사전(1999)◇조선대백과사전 22권(2001)
87	트랜스젠더	성전환	성전환증◇성달라지기	◇性轉換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미 수컷 또는 암컷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있던 개체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반대되는 성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현상.	◇생물	#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엔싸이버(2007)◇조선말대사전 1(1992)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88	평등	평등		平等◇平等	똑같은 원칙에 따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접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은 권력·부·명예 등 사회적 가치의 분배 원칙 또는 기준과 관련되어 중요성을 지닌다. 많은 사상가들이 제시한 공평한 분배의 원칙 속에는 평등과 불평등의 두 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절 대평등과, 각자의 잠재적·후천적 능력과 기여도 및 필요의 상이성에 바탕을 둔 상대적 평등, 즉 정당한 근거에 기반한 불평등이 그것이다.	사회적권리와 의무가 같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사람들사이의 관계. 사람들의 사회적본성과 사회의 본질에 맞는 철저히 인간적인 사회적 관계이다. 평등은 자유와 불가분리적으로 밀접히 통일되어 있다.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사이에서는 지배와 예속이 있을수 없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만이 허용된다. 반대로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려면 아무런 구속도 없이 자유롭게 상대방에 대할 수 있어야 한다.		\$\$	행정학사전(2000) ◇조선대백과사 전 22권(2001)
89	평등선거	평등적 선거		平等選舉 ◇平等的 選舉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의 효과가 평등한 선거.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이다.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한사람이 하나의 선거 표로써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선거원칙. 평등적선거원칙은 일반적선거원칙을 보충하는 선거원칙의 하나이다. 그것은 선거자들이 다같이 선거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투표에서 비중의 차이를 둔다면 일반적선거원칙은 사실상 보장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 남자, 여자 등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한다.	정치◇ 정치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22권(2001)
90	폐경	폐경	◇달거 리 멧 기, 월 경폐지	閉經	여성의 월경이 없어짐.			\$\$	2004년 신어(2004) ◇영조대사전 (1992)
91	피임법	임신 조절법		避妊法◇ 妊娠調節 法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	인공적으로 임신을 조절하는 방법. 임신조절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자가 질강안에 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남자고무주머니의 사용, 질외사정, 성교중단)과 정자를 질강안에서 죽이는 방법(살정자약사용, 질세척 등), 정자가 자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자궁경관모자, 질폐싸리움 등 적용), 성주기를 리용하는 방법(달거리예정날자기준법, 기초체온법, 자각증상에 의한 조절법), 영구피임법(란관피임, 정관피임)이 있다. 그리고 배란억제법(먹는 피임약적용, 호르몬제적용), 수정란의 착상저해법(자궁내피임기구적용), 면역피임법(피임확전적용)이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대백 과사전 29권(2001)

일련 번호	남쪽 용어 (표준형)	북쪽 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자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92	해산바라지	해산방조	산바라지, 해산구완	解産 --- ◇解産--	해산을 돕는 일.	몸을 푸는 데 시중을 드는 일.		#	표준국어대사전 (1999)◇북한상용 특이용어집(2000)
93	핵가족	분가가족	소가족 (小家族)	核家族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			#	표준국어대사전 (1999)
94	협의이혼	협의리혼		協議離婚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하는 이혼. 이혼 판결이 필요 없고, 호적 신고로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사이의 협의에 기초하여 행정적절차로 하는 리혼. 재판리혼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우리 나라에서 협의리혼은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에 의하여 1946년 9월 14일 이후부터 실시되었다. 협의리혼은 부부쌍방이 리혼에 대한 협의에 도달하면 리혼서를 자기들이 살고있는 시, 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정적방법으로 하는 리혼이다. 1958년 3월 8일 내각결정 제24호에 의하여 협의리혼은 폐지되고 부부가 협의에 도달한 경우에도 모든 리혼을 재판절차로만 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 법률	\$\$	표준국어대사전 (1999)◇민사법사 전(1997)
95	호주	호주	호 두 (戶頭)	戶主◇戶主	한 집안의 주장이 되는 사람.	한 집안의 살림을 책임진 주인.	법률	\$\$	표준국어대사전 (1999)◇조선말대 사전 2(1992)

<첨부>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 참여기관 현황

번호	기 관 명	공동의장	연구책임자
1	통일연구원	이봉조	손기웅
2	국토연구원	최병선	이상준
3	산업연구원	오상봉	이석기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석호익	강인수
5	한국교육개발원	고형일	윤종혁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김희규
7	한국교통연구원	김형진	원동욱
8	한국법제연구원	박세진	손희두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애	김원홍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윤덕홍	이서행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원덕	강일규
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희성	강광규
13	평화문제연구소	김명수	손홍자

2006년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2007년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 연구

2007년 11월 14일 인쇄

2007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인 : 김 경 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184-0 93330

<정가 5,000 원>

KW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9 788984 911840
ISBN 978-89-8491-184-0